

라서 서구는 이제 일방적 설교를 그만하고 아시아의 독특한 사회를 연구하고 배우라는 식의 논리를 펼친 것이다.

동서양간의 인권 문제 접근 논리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구적 인권논리의 사상적 배경은 로크(John Locke)의 자유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 둘째로, 서구사상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며 논리를 전개한 반면 동아시아는 집단 및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요 정치체제는 서구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와의 체제우월성 시비로 연결된다. 셋째, 인권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구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더 우선시 한다. 넷째, 서구에서는 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며 정치발전을 우선시 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빈곤탈피 등 경제발전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 흥정 논리에 대한 시각차도 반영하는데 서구에서는 흥정 논리에 대해 부정적 혹은 제한적 수용 태도를 보이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쟁의 정점에는 항상 인권 사상의 보편적 수용이라는 서구적 명제와 문화적 특수성에 입각한 동아시아의 갈등이 논쟁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정영선 1999, 235-236).

III. 경제성장과 인권 흥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의 목록에 관한 수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본 고에서는 특별히 경제성장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인권의 접근 방법 및 인권 흥정논리에 대한 입장 등을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권리 대 발전의 '인권 흥정' 논리는 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된다. 먼저, 자유의 흥정(the liberty trade-off)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정부의 정책수행에 잦은 비능률을 도입하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는 이러한 권리들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둘째로, 평등의 흥정(the equality trade-off)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당장 충족시키거나,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소득분배를 달성할 경우 발전의 속도와 진행이 지나치게 늦춰질 것이란 전제하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권리를 희생

하는 것이다. 셋째로, 필요의 흥정(the needs trade-off)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발전 및 투자를 위해 다른 소비적 분야를 억제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Donnelly, 1989, 164-166).

이러한 논리들은 단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도상국에서 선호하는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특히 자유의 흥정은 개발독재의 버팀줄이었으며, 평등의 흥정은 수많은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의 한 요소로서, 국제금융기구(IMF)를 비롯한 서구 국제재정기구들에 의해 권고(혹은 강요)되고 있는 관행의 일부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시아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 보다는 문화적 권리와 인권 모두를 유린하는 보편적인 발전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논리들이다.

사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근대화를 겪는 동안 단기간의 인권 희생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및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전통적인 관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사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었을지언정 이러한 관념은 일부 개발 도상국들에 의해서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Donnelly, 1989, 163). 특히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우선'(growth-first)정책이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유지하고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권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경제발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성장 우선 논리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한 모든 것(심지어는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마저도)이 해결되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⁵⁾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정치안정이나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권력과 정치적 이해에 기반을 둔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인권탄압을 위한 변명일 수 밖에 없다. 즉, "가난이 모든 자유의 걸림돌"이라며 경제적 번영만이 인간 존중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내세우는 동아시아의 권력자들의 주장은 결국 "일부 선택된 소수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시키며 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Caballero-Anthony, 1995, 43).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의 발전 노력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이는 주로 정부나 사회내

5) 학자들간에는 빈곤탈피를 위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상충된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상술해 보면, 성장 낙관론자들(growth optimists)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 빈곤추방은 더 가속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성장 비관론자들(growth pessimists)은 무분별한 경제성장은 오히려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물가상승을 촉진시키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가난한 자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입장을 고수한다(UNDP, 1997, 71-72).

다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서 단기간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희생을 담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민·정치적 권리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단기적으로나마 희생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권위주의 정권들의 논리는 증명되기 어렵다. 이들 권위주의 정부들의 일관된 주장은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인권 신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인권신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인권 흥정 논리는 허구로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은 지난 수 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그들의 인권실상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성장의 선두 주자인 싱가포르의 경우 1995년 기준 세계 랭킹 7위의 1인당 국민소득(\$22,604)을 자랑하고 있지만 세계 유수 인권기구가 측정하는 인권지수는 항상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Humana, 1992; 미국무부 인권 보고서, 1998). 특히 1982년의 인권 상황이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계속한 10년 후인 1992년의 인권 상황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경제성장이 인권 신장을 유도할 거라는 낙관론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비록 최근의 경제성장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세계에서 평가하는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결국 이는 경제발전이 인권신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⁶⁾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의 기본적 전제인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⁷⁾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사회경

6) 이외는 달리 경제발전 수준이 동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코스타리카(Costa Rica), 자메이카(Jamaica), 베네주엘라(Venezuela) 등은 인권지수에 있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휴메나(Charles Humana)의 1992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 나라의 인권 지수는 각각 90%, 72%, 75%로서 싱가포르(60%), 말레이시아(61%), 태국(62%)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Humana, 1992).

7) 국민들의 절대빈곤 문제와 더불어 국가는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등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문제의 해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에 있어서 서구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나라의 소득 분배 구조는 '부익부빈익빈' 현상 속에서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례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정부 지출 대비 복지비가 10% 미만으로서 서구 여러 나라들의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hung, 1999, p. 95 참조.

제 정책이 서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으며 이들 나라들이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아시아 임금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경제발전이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논리는 더욱 그 설자리를 잃게 된다. 실제로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발전계획을 주도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 정책이 주로 효율성, 질서유지에만 집중되어 있지 노동자의 근무환경의 민주화 등에는 관심이 적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유린 사례가 많았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IV. 개발독재 성장모델의 허구성

현재 동아시아에 유행하고 있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과 '아시아식 민주주의' 논리는 30여년전 박정희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한국식 민주주의'(Korean style democracy)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동안 한국은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성공적 경제성장의 본보기로서 세계에 알려져 왔다.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호랑이'(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등장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강의 기적은 다른 여타의 세계에 가장 귀감이 되는 경제 성장 모델이었다. 값싸고 잘 훈련된 노동력, 전문적인 경제관료, 높은 GNP성장, 그리고 부의 효율적 분배 등이 주요 칭송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그늘 속에서 자행된 군사 쿠데타, 시민 봉기, 광주 민주항쟁을 비롯한 여타의 인권 탄압에서 비롯된 대학살 등은 거의 논외가 되었다. 대신에, 강력한 발전 전략, 대 북한 안보 논리, 유교 전통, 혹은 한국 정치의 순수성만이 강조되었다.

'한국적 모델'의 신봉자들은 권위주의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한다(Kagan, 1998, 39). 첫째로, 권위주의가 경제도약을 위해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도약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이끌만한 강력한 중산층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민주 정부를 구성할 만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에 민주주의가 상륙했다면, 그것은 미성숙된,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비생산적인 민주주의, 따라서, 비자율적이고 위협스럽기까지 한 민주주의에 불과했을 거란 지적이다. 즉, 일단 한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길에 제대로 진입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식의 논리는 일면 '안정적 민주주의'(stable democracy)를 이루는 과도기가 평균 소득수준 5,000불에서 6,000불 사이에서 형성되며 7,000불 정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몇몇 학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Huntington, 1991; Przeworski, 1996; Rowen, 1996). 이러한 계산으로 보면, 중국은 현재의 연간 GNP 성장을 5%를 감안해 볼 때, 2015년 경에 이르면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헨리 로웬(Henry Rowen)의 주장을 들어 보자.

부의 성장은 교육수준의 증대, 기업의 성장, 정부의 자율성 증대를 수반하며, 정치권력을 잡은 민주정부의 생존을 가능케하는 등 태도 변화를 꾀하게 된다.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등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으며, 대만이나 한국 등의 나라에서도 소득 수준이 이러한 범위(\$5,000-\$6,000)에 이르렀을 때 민주주의로 전환이 되었다(1996, 5).

이러한 논리들은 그 동안 개발독재를 추앙하여 온 아시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유행적인(fashionable)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여 왔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세계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인권 역사는 그러한 '진화론적' 논리를 정당화 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전통적 권위주의 모델로부터 민주주의로 진화해 왔는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켰는가? 한국의 인권 역사는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에 힘입어 한국은 1980년대에 이르러 이미 세계 상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인권 수준은 세계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한 예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지나는 동안 이른바 대표적인 반민주약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경제 성장과 한국의 인권 지표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준다.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반민주약법에 의한 기소자 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계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기소건 수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주

8) 1990년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99% 이상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기소된 건수를 곧 인권 탄압의 예(예를 들면, 양심수 구속자 수 추정 등)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변과 기독교교회협의회 공저, 1992, [Human Rights in South Korea, 남한의 인권] 참조.

화 격변기라고 볼 수 있는 1986년과 1987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6공화국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제 5공화국 때보다 더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다. 1993년 이후 그나마 감소한 추세는 단순히 경제발전의 여파이었다기보다는 군사독재정부의 문민정부에로의 정권이양에 따른 결과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표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권 침해 (1981-1996)

년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인당 GNP(US\$)*	2,836	2,993	3,321	3,585	3,797	4,228	4,718	5,246
기소건수**	389	314	436	345	718	1,586	1,146	610
년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인당 GNP(US\$)*	5,544	5,997	7,504	7,803	8,161	8,751	9,437	10,548
기소건수**	725	827	753	530	233	480	286	526

* 1990년 기준 불변 가격

** 기소건수: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된 수

출처: 법원 행정처, 1982-1997, 『사법연감』, Chung, 1999, pp 116-128, 재인용.

결국 동아시아가 경제 성장 및 인권 제한 논리의 모델로 삼고있는 한국의 인권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의 인권 논리는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정을 단순히 인권 흥정 논리나 권위주의 논리에 의해 해석을 시도하는 측에서는, 당시는 권위주의 체제인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 비롯된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숙된 사회였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준비가 완성된'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경제 성장 수준이 아니라 박정희 암살 이후 한국 정권을 뒤흔들었던 군사 독재자들에게 종말이 왔음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독재자들은 단지 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만드는 순간을 결정하는 평균 소득 수준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각방면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민주화의 대세에 밀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권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제성장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민·정치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논리는 허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든지, 혹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든지 하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며 그들의 인권 정책 실패를 정당화시켜왔다. 세계 여러 대륙의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국제 비교를 해온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인권 억압적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 성장에 성공한 어떤 일관된 내적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n, 1997). 반대로 이런 체제가 오래 지속된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만연, 정부의 책임성 결여, 부의 집중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견된다. 즉별적 연줄망이 성행하여 정책 형성의 투명성이 저조한 것도 특징이다. 이런 요인들이 한때 성장인 것처럼 보였던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적 잠재력마저 잠식해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한상진, 1996, 16). 결국 권위주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V.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방향

국제적으로 1960년대까지 인권은 주로 '빈곤'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장애요소가 제거되면 서구와 같이 확보되리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지배하기도 했고, 지금도 인권보다 경제가 우선한다는 정치논리의 현실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나,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실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소수 독점재벌에 의한 것이었고 독재정부는 그것과 철저히 결탁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러한 낙관주의나 현실주의는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박홍규, 1995). 도리어 그러한 성격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인권침해, 특히 노동자의 인권침해는 더욱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경제성장 자체가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구호로 악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IMF 체제를 겪으면서 대량 실업 등, 또 다른 모습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본다.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개발독재의 기억이 오래지 않은 우리의 경우 '인권의 보편성'은 항상 도전을 받아 왔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즈음하여 '인권 대통령'이 수반으로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동시발전'을 천명했지만,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경제적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형편이다.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의 기본정신인 정의구현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시장경쟁 논리 앞에서 너무 쉽

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경제 논리의 기본적 확산과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노동자 쪽에 기울어진 고통분담, 가정 파괴, 중산층 붕괴 조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인권의 근본 이념을 달성하기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자칫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동아시아에 IMF 체제를 몰고 온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논의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IMF 이전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동아시아의 서구식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IMF 이후의 논쟁은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따른 서구의 냉소와 아울러 이에 따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반발 및 자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한 서구의 냉소적 시각을 보면, 가족주의 등의 유교적 가치가 배태한 정경유착과 인치가 경제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애초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고, 최근의 경제위기는 운명적이라는 '유교 폐해론'이 다시금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⁹⁾ 서구 학자들은 70·80년대에는 동아시아의 비약적 경제발전이 근면·검약·협동과 같은 유교 도덕과 기강에 힘입었다는 '유교 동인론'을 전개한 바 있었다(Korzec, 1999; Li, 1999). 따라서 최근의 아시아적 가치론을 비판하면서 유교 폐해론을 강론하는 것은 유교동인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¹⁰⁾

이상의 비판을 중심으로 향후의 인권 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먼저, 아시아적 가치가 권위주의나 개발독재의 선봉으로 서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MF 이전에 기세등등하던 동아시아의 대 서구 반격이 사실상 자국내의 개발 독재 및 권위주의를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9) 서구의 이러한 접근에 비판적인 논객들은 이러한 유교의 폐해론을 헤겔, 마르크스, 베버, 파슨즈 등으로 이어진 서구 지식인들의 아시아 열등관을 변안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례로, 일찍이 베버는 "유교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근본요소들이 가장 결여된 전통"이라며 유교의 비경쟁과 비합리성을 꼬집어 혹평한 적이 있었다.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8일자 참조.

10) '유교동인론' 및 '유교폐해론'과 관련하여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는 정치나 경제와 무관하며, 이를 정치·경제의 성공 및 실패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Francis Fukuyama, 1998. "Asian Values and the Asian Crisis," *Commentary*, Vol. 105, No. 2.

이러한 경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운운하며 서구의 인권 문제 간섭에 대해 '주권간섭' 등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자체의 모순에 빠지며 설득력을 잃게 된다.

둘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서구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휩쓸려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압박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서구의 우월주의 및 제국주의의 한 보기로 서 경계되어야 한다. 즉, 아시아가 발전한다 싶으면 서구의 경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시아가 위기가 싶으면 시장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서구식의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서구의 이중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¹⁾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자본의 무제한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국제적 이동을 통한 초국적기업으로의 자본 집중화 현상을 낳게 되며, 이들에게는 자본의 자율성만 강조할 뿐 노동자나 시민의 인권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비용 삭감, 외국 자본 유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삭감 및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권 유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¹²⁾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이러한 서구의 의도는 세계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아시아의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을 해체시키려는 음모일 수도 있다. '이단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말레이시아의 총리 마하티르 모하메드의 논리가 '아시아적 가치'를 신봉하는 여러 아시아 나라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리의 귀결이다.¹³⁾

1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이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국제경제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 조건을 통해 부과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되었고,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는 WTO, NAFTA, APEC과 같은 지역 무역기구나 IMF, IBRD,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추구되었다.

12) 이처럼 외채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원동력이자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이다.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해서 많은 인권단체들이 '구조조정과 인권의 종합적 보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이처럼 인권적 시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보면 그것이 인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반인권적이기 때문이다. 이대훈, 1998, 94-95.

13)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는 '한국경제신문' 1998년 10월 23일에 기고한 '아시아적 가치' 라는 글에서 왜 말레이시아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며 자주노선을 채택했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유교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빌미삼은 천여명의 서구 환투기꾼의 부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IMF의 천편일률적인 처방은 오히려 아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 사상의 장점과 서구 사상의 장점을 조화시킨 동서 융합(joining East and West)의 새로운 인권 담론의 정립이 절실하다. 동양의 전통적 가치 중에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여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제대로 발휘되기만 하면 서구적 가치보다도 월등하게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와 덕목은 마땅히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고 물질주의로 흐르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소중한 전통적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전통적 가치들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획'(re-demarcation) 하고, 법과 정책 등의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법률화'(legaliza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개인의 존엄성을 비롯한 민주주의 논리는 동양 사회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 덕목이며, 동양에서 주요 가치 덕목으로 삼고 있는 효 및 형제애를 포함한 가족주의, 공동 사회를 위한 윤리 강령 등은 서구 사회에서도 심층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성' 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인권 논리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우는 '아시아적 가치'나, 경제성장이라는 당면과제에 밀려 희생되어야 한다는 인권 흥정 논리는 단지 인권 탄압을 정당화시켜 온 구실에 불과했다고 본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근거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중이 갖는 인권에 대한 믿음이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침해하는 입법이나 행정 및 사법, 또는 비민주적 관행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으나 동아시아의 어떤 정부도 그러한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침해할 수는 없다.

물론 경제성장이 인권의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의 인권사를 보면, 경제성장 및 발전이 자동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의 신장을 가져온

아 경제위기를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0월 23일 자 참조

14)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 인권사상과의 조화 및 양립을 위한 시도에 관한 연구는 Tu Weiming(1998 & 1999)의 글 참조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소득 분배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마저 배제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우선 논리는 그 자체의 논리적·경험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그 나라 국민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없이는 무의미하며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인권 유린 사례는 경제성장이란 이름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아울러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법의 지배'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적 가치론이 동양과 서양을 가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전자민주주의의 보급이 확산되고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가 인권억압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국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동아시아도 물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등이 주장하는 아시아 이질론은 인권의 소중함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하나의 지적 함정이며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논리인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대에도 더 이상 '개발 독재'란 상품을 포장하는 도구로, 또는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권위주의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 것만은 사실이다.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개민주의에 대한 건설적인 사상적, 체제적 근거를 더 이상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건설적인 논쟁은 새롭고 창조적인 사상논쟁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논쟁의 기본 방향은, 서구 사상의 동양적인 조화, 또는 동서양 문화의 장점을 서로 융화시키며, 인간 중심의 논리로 전개될 때 바람직한 인권 담론은 더욱 그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기독교협의회. 1992. 『남한의 인권』. 유엔인권 위원회 보고서.
- 박사명. 1999. "보편성과 특수성: 정치학적 지역연구의 문제의식."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
- 박홍규. 1995. "개발독재와 인권."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해방. 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심포지움.
- 이대훈. 1998. 『세계의 화두』. 서울: 개마고원.
- 정영선. 1999. "동아시아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인권 논의의 '아시아적 가치' 비판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권 2호. 한국 정치·정보학회.
- _____. 2000. "동서양 인권사상의 비교." 탁진환 외, 『현대 비교정치학의 영역과 경향』 도서출판 공익사.
- 한상진. 1996.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계간사상』 겨울호.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0월 23일자.
-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8일자.
- Bell, Daniel A. 1996. "The East Asian Challenge to Human Rights: Reflections on an East West Dialogu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8, No.3.
- Caballero-Anthony, Mely. 1995. "Human Right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Development: A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in Tang ed.,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 Pacific*. New York: Printer.
- Chung, Young-Sun. 1999.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Trade-off Thesi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Christie, Kenneth. 1995. "Regime Security and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Political Studies*. Vol. XLIII.
- Cu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Donnelly, Jack.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98. "Asian Values and the Asian Crisis," *Commentary*, Vol. 105, No.

2.

- Humana, Charles. 1982 & 1992. *World Human Rights Guide*. London: Hodder & Stoughton.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_____.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 _____.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Kagan, Robert. 1998. "What Korea Teaches." *The New Republic*. Vol. 218, No. 10.
- Kim, Dae Jung. 1994. "Is Culture Destiny?" *Foreign Affairs*, Vol. 73, No. 6.
- Kim, Yung-Myung. 1997. "Asian Style Democracy: A Critique from East Asia." *Asian Survey*, Vol. 37, No. 12.
- Korzec, Michal. 1999.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Europe-Asia Studies*. Vol. 51, No. 4.
- Li, Xiaorong. 1999.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Dissent*. Vol. 46, No. 3.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owen, Henry. S. 1996. "The Short March: China's Road to Democracy." *The National Interest*, Vol. 45, No. 61.
- Sen, Amartya. 1997.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The New Republic*. Vol. 20, No. 3.
- Tang, James T. H. ed. 1995.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 Pacific*. New York: Printer
- Tu, Weiming. 1998. "Joining East and West."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0, No. 3.
- _____. 1999. "Confucius: The Embodiment of Faith in Humanity." *World and I*, vol. 14, no. 11.
- UNDP(United Development Programme). 1996 & 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 S. State Department. 1998. *Annual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Practices*.
- Woo-Cumings, Meredith. 1994. "The 'New Authoritarianism' in East Asia." *Current History*,

Vol. 93, No. 587.

- Wong, Y. C. Richard. 1999. "Lessons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Cato Journal*. Vol. 18, No. 3.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정보기술과 인권*

허 상 수**

I. 문제의 위상

오늘날 세계 수준의 주류 담론으로 인권보장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인권문제는 관점에 따라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의 패권화 또는 서구 문화제국주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양은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천박한 이분법과 통념에 근거한 주장이 제기된다(한상진, 1996). 그러나 인권은 것처럼 지리적, 문화적 성격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현재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인권개념이 개인성에 우위를 둔 것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교통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가 새로운 지적 주목을 받으면서 인권의 역사나 민주주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인권, 국가와 인권, 과거청산과 인권, 신자유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따지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소개되고 축적되고 있다(크랜스턴, 1981; 김병문 외, 1987; 후버 외, 1992; 스키하라, 1995; 한상진 외, 1996).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배기구로서의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벗어나면 인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공권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벌여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독립과 해방을 맞은 다음에는 경제성장이 생존권 보장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개발전략을 구사하였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사회가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그만한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 초고를 읽고 유용한 논평을 해 준 조효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상정했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의 추진은 엄청난 인권유린과 생태 파괴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같은 여러 형태의 비용이 수반되었다.

따지고 보면 20세기에 들어서서 '잘 살아보겠다'는 근대화의 추구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제3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덕이 되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다수의 진정한 행복할 권리의 쟁취는 소수권력집단의 농간과 물리력에 의해 봉쇄를 당하였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백성들은 서구화를 통해, 달리 말하자면 공업화를 통해 자신들의 전통과 습속이 짓밟혀도 무방하다고 받아들였다. 먹거리와 입을 거리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선진국의 것들로 채워져야 직성이 풀리곤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서양 사회의 '자유'와 '평등', 시민의 권리는 배제되고 왜곡된 채 현상과 겉치레만 답습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전지구적 차원에 걸쳐 확립되어 왔던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사회로의 진전과 이행으로 인해 인류 사회의 보편적 담론이며 규범이어야 할 새로운 인권상황이 연출되고 있다¹⁾. 현대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생산력 발전, 특히 물질적 발전에 집중되어 기술문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지만 인간의 사적 영역과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인권문제 해결에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를 갖게 만들고 있다.

이 소론에서는 새로운 사회형태의 출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몇 가지 규범적 수준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제안을 시도하려고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권리는 신장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에서는 기술변화에 대한 맹신과 이용자의 침묵이 권리공백지대를 방임할 수 있다는 가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²⁾. 즉 정체성의 파괴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언급한 '빅 브라더'(Big Brother)가 현존한다는 점이다(Davies, 1996). 이제 인권문제의 역사와 기술의 성격,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대안을 살펴보자.

- 1) 정보화사회, 정보사회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정의가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기반을 둔 컴퓨팅과 네트워킹, 사이버스페이스가 실재하는 사회관계라는 서술적 의미로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크리스찬 아카데미판, 1999).
- 2) 논의의 경제상 정보사회의 낙관적 측면이나 긍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서술은 이 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예측은 매우 많은 논자들에게 의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정보사회가 낳고 있는 비판적 관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인권문제

정의사회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은 동서고금 모든 발달한 고등문명에 공통된 염원이었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권리가 거론된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가를 따질 때부터였다고 전해진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로마의 법률가 율파인은 "자연법이란 국가가 아닌 자연이 로마 시민이든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인권은 자연법의 대체물이었다.

중세이후 르네상스기로부터 17세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대헌장과 권리장전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17-8세기에 인권은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베이컨, 로크, 디드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 자연법에 의한 근대적 해석이 가해졌다(Locke, 1965; 바삭, 1986).

제퍼슨과 라파예트에 의해 인권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인류의 진보와 함께 천명되어 미국혁명(1776년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1789년의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을 거치면서 인권은 구체성을 얻게 되었으나 보편성을 잃게 되었다³⁾(장호순, 1998). 즉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분리되었다(오호택, 1988; 엘리네크 외, 199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특정 국가의 시민은 자연권으로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피식민지인들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도 불과 2세기를 넘지 못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인류는 국제연합(UN)을 통해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즉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했다(신동아 편집실, 1980;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1988; Brownlie, 1981). 여기에서 정치적 자

3) 프랑스 인권선언은 '1791년 헌법'의 전문(前文)으로서의 인권선언(1789년 8월 26일), 1798년 헌법의 서문으로 지롱드파의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동년 5월 29일)과 혁명에 의해 그것을 대체한 산악파의 '인간과 시민들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동년 6월 24일)과 '1795년 헌법'의 전문으로서 테르미도르파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과 의무들에 대한 선언'(동년 8월 22일)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대의 사도신경'이었다. 이것들은 극적인 사회과정의 산물들로 '자유'와 '평등', '생존권'과 '소유권',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사이의 대립과 긴장, 개념간의 양면성과 상반성, 권리들간의 통합과 괴리, 모순으로 점철된 당시 세력관계와 계급관계의 일정한 반영이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시민권, 정치권, 사회적, 경제권으로 진행되는 도정을 제시하고 있다(최갑수, 1998).

유권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및 연대성의 권리 등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아 선언은 인권의 포괄적 속성과 전지구적 적용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아직 그런 보편성은 전지구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근대에는 '문명의 특수성'이라는 새로운 가치(혹자는 '차이의 철학'이라고 부른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언 27조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와 그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밝혀 과학기술과 인권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후 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f Human Rights)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분리되었다.⁴⁾ 이 A 규약 12조에는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과 지적 재산권이 언급되고 있다. 1968년 선언 채택 20주년에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회의에서 채택한 성명 18조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⁵⁾

그리하여 노동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사람대접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등에 열거되어 명목화되었다(한상범, 1985; 버겐탈, 1992). 산업사회의 국제인권 규범은 공업선진국 뿐만 아니라 후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헌법 10조), 사생활 보호(17조), 통신의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표현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형사피해자의 권리(27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2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최유진, 1998; 허중범, 1999).

따라서 한국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4) 이 규약은 채택 10년 후인 1976년부터 발효되었으나 미국은 1992년에 B규약만을 수용하였고 한국은 두 규약에 모두 가입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5) 1975년 소련 등 동구 국가가 초안을 제출하여 채택한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과 기술적 진보의 이용에 관한 선언', 1978년 인도 푸나에서 개최된 세계질서모델계획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과 기술의 응용: 고발선언', 1986년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상과 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이용' 권고안, 1999년 비엔나 선언 11조, 199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간계능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1999년 6월, 부다페스트의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과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과 '과학의제-행동강령' 등은 인권과 인간존엄성과 과학기술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접근중의 일부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인권규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권리를 살펴보자. 개인 주위의 환경이나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the right to know)'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영향력의 증대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증하게 된다. 보편인권선언 제 9 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는 타인이나 외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는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및 사상을 추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구하고 전달할 권리와 '정보를 받을 권리'와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1766년에 헌법의 일부인 출판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에서 공문서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문화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장전 제 15조에서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라고 규정하여 알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영국에서는 공무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889, 1911, 1920, 1939)을 통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정보접근)법(Local Government Access to Information Act, 1985)을 제정하여 행정에서의 공개성 결여 시비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연방국가에서는 1982년에 유사법률을 제정하여 캐나다의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뉴질랜드의 공무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1974, 1976, 1986)과 전자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 of 1996)이 제정, 개정, 시행되고 있고 연방정부기관의 회의공개를 위한 정부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1976)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확립과 운영은 개별 국가와 문화, 시민사회의 존재 유무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법과 제도의 존립조건에서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일까?

III. 기술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⁶⁾

현대 사회는 기술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물셀 틈 없는' 기술의존사회이다. 기술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과 여러 가지 혜택인 '의도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토목기술의 소산인 다리 두 개의 철거와 재시공으로 서울시민이 겪었던 고통과 불편과 피해라든지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와 같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⁷⁾ 곧 기술은 축복이면서 재앙이기도 하다. 이런 기술사회에서는 기술체계의 '사소한' 일부의 문제가 엄청난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대형 기술사고를 낳는 '위험사회'로 진행될 수 있다(Hughes, 1983; Beck, 1990(1997)). 한 예로 1990년에도 미 전신전화회사(AT&T)의 프로그램 오류로 가설 1개월 후에 9시간동안 장거리통신이 차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Huntress, 1998). 바로 이점에서 기술은 중요한 사회학적 인식대상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인권문제와 결부를 지어 논의할만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기술문제를 보는 사회과학적 접근은 주로 기술결정론에 근거한 것이 주류를 이뤄 왔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고 국가와 산업정보화가 실현되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는 '강한 기술결정론'과 기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기술적 대처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하다는 식의 '약한 결정론'이 담론의 대중을 차지해 왔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그 자체의 발전 논리가 있으며 선형의 발전 경로를 따라 의도한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동일하고 유사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고 기술결정론자들은 상정한다. 그래서 기술의 사용자는 내재적 발전논리를 이해할 필요도 없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기술은 '암흑상자'(black box)가 된다. 기술혁신의 기원이나 발명품의 내용은 철저하게 불문에 붙여진다. 만

6) 허상수, 1999.

7) 시각각(視感覺)으로 보기에 말쑥한 수도 서울의 다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두 개나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하나는 성수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당산철교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을 때만 해도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또 당산철교가 강도 실험 등의 오랜 기술 논쟁 끝에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하철공사 기관사들에 의해 문제가 감지되어 논란이 시작되었다(한경희, 1998). 이처럼 모든 사고에는 그것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있는 것이다. 이 다리의 운명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단순한 시공상의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Winner, 1980).

능의 기계로 신비화되거나 작동과정은 사장되어 버린다. '독립변수로서의 기술'은 '종속변수인 사회'에 일방적인 영향과 충격을 줄뿐이다(Rosenberg, 1982; McGinn, 1991: chap. 5; Webster, 1991: chap. 1; Westrum, 1991: chap. 4). 그래서 기술과 사회간의 관계를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MacKenzie, 1981).

럼포드나 위너가 갈파하였듯이 기술과 정치의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Mumford, 1964; Winner, 1980). 기술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경우는 군사기술의 발전에 대한 19세기 이래 근대국가들의 행태를 통해 잘 보여진다. 역대 독재자 가운데 기술주의자가 아닌 경우가 드물 정도이다. 또한 거대과학기술의 출현, 가공할 폭발력과 상상능력, 과시적 군사 기술개발 경쟁 등이 기술과 국가, 무기개발과 정치의 비례적 함수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도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극소전 자혁명의 맹아가 뿌려졌던 것이다. 이런 논의는 기술에 대한 중립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일방향적 논의의 맹점을 짚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이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유일무이한 요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나 사회적 형성론의 시각에 서게 되면 형성 중인 정보화사회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보다 풍부한 전망을 제시해 준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이용, 기술혁신에 대한 새로운 설명은 과연 '사회가 기술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송성수 편역, 1997). 그것을 위해서는 '암흑상자 열어 짓히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문에 붙여졌던 기술혁신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도 정치적, 사회적 산물이며 인공물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하나의 기술체계를 이루고 비선형(非線型)의 발전을 하게 되는 궤적을 그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집단에 따라 동일한 기술문제에 다른 해석을 가하게 되어 또 다른 기술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동일한 기술에 대해 기술혐오와 애호, 매니아(manía)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술의 일반적 속성은 전지구적 광역성, 비대칭성,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신기술의 이전과 도입으로 인한 광역성은 세계화의 새로운 기초가 되었으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impacts)이 국소적이기보다는 전지구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즉 기술진보와 인류의 처리능력 및 윤리적 대응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대칭성과,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변화가 장래에 어떤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지 파국이 벌어질 때까지 내재적으로 불확실하다. 기술이 지닌

이런 일반적 의미외에도 정보기술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생겨날 수 있다.

IV. 정보기술의 특성

정보기술의 특성은 기존의 문자, 음성기호와 영상이미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어 처리, 가공 및 저장과 소통이 매우 원활한 데 있다. 이 새로운 소통의 기술은 경우에 따라 감시기술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 관리, 저장하는 주체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용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는 이런 정보기술의 특성을 기초로 인류사를 재규정하기도 했다(포스터, 1998).

그래서 정보사회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낙관론자들은 전자민주주의를, 비판론자들은 정보불평등을, 이용자들은 가상공동체에 대해 나름의 논쟁 주제에 눈길을 맞춰 이론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훨씬 낙관적인 견해나 더 비판적인 입장이 제시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사회가 기존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어떤 차원에서 단절과 연속성을 보이는지 여부가 탐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인터넷의 특징은 전지구적인 소통구조와 쌍방향성, 실시간 사용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간들간의 의사소통에 기술이 침투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인간간 의사소통이 생산기술을 만들어 냈다면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간 의사소통과 정보기술이 서로 혼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은 정보기반의 유무에 따라 국가간 빈곤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덜'을 제공하는 세계화의 기초 수단이 된다.

이런 특성에 기초한 기술체계로 정비된 정보사회는 첫째, 복합성의 증가 둘째 역설, 불일치, 모순들의 혼재와 수용, 셋째, 불안, 불확실성, 전망의 불투명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근대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지식을 통해 일상생활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생산된 학술지식은 세상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학문과 일상생활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한다. 또한 정보의 탐색과 이용이 위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선택 가능성을 증대시키지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 원래의 위험 부담이 줄기는커녕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새로운 부담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가 다시 발생하는 순환과정에 빠질 수 있다(고영만, 2000).

정보기술은 국가의 성격과 정치경제체제의 내용에 따라 이용 목적과 용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권리보호와 침해의 가능성 양자를 두루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정보기술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취약하다. 청소년들은 정보기술의 충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정보기술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보기술의 이용과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규약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권리공백지대가 형성된다.

'감시사회'라는 용어는 G. T. 랫스(1985년)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주의적인 통제의 마지막 장벽의 하나가 부서지는' 상황을 언급할 때 처음 사용되었다(Lyon, 1994). 나중에 이 말은 감시가 우리 시대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었고 사회적, 정치적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감시는 개인에게 불쾌감과 불편, 자존심의 훼손, 심각한 심리적, 육체적 파괴를 동반하는 수가 있고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원래 감시란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도청하거나 검문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감시에는 반드시 감시의 주체가 있는데 서구사회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인구집단의 양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일상화되어 왔고 그것이 복지국가 행정의 한 토대가 되어 결국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보수집과 관리는 국가부문의 지나친 권력행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상대적으로 국민억압과 지배의 한 과정으로 편입될 위험이 다대하다(고영삼, 1998)⁸⁾. 또한 산업세계에서의 감시는 누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지를 살피기 위한 노동현장에서의 감시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감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 소비행태, 의식 등을 전자적으로 추적하여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결국 인간은 투명한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은 신세이거나 기술에 물샐틈없이 포위된 형

8)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제도는 1962년 5월 10일 법을 제정하고 '68년 12월 21일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그 이전시기의 양민증, 도민증에서 한국전쟁직후 '남한내의 반국가적 불순분자를 색출, 제거하고 시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급되었던 시민증과 도민증을 통합시킨 제도이다. 제정당시에는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북한무장공비사건의 발생이후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대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법률 제 2150호 개정이유 중에서) 18세 이상에게 강제 발급한 것이다(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1996).

국에 놓여 있다. 이 전자감시사회는 감옥, 병원, 병영과 같은 공간에서 정상인을 비정상인으로 간주하여 정상인을 만들기 위한 감시효과를 낳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사회에서는 본의가 아닌 차원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감시의 국소성보다는 감시와 통제의 전지구성이 더 심각한 주권문제와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야 국내에 소개된 군사대국의 전자도청시스템에 그 단적인 사례이다.

국소적 차원의 전자감시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뿐만 아니라 소비행태 등의 자료가 수집되어 그것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통제한다는 데 있다. 푸코가 말하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원형감옥(Panopticon)은 그런 전자적 감시를 은유(隱喩)하는 데 사용된다(Foucault, 1977). 한 사람의 감시자가 여러 명의 수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건축구조와 같이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성원은 제 3자에 의해 원치 않는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공적 기구에서 신상에 대한 기초 정보가 주민등록과 같은 형태로 수집될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시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이 있고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사적 기구에서는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자동차회사에서도 개인의 재산과 소비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정보가 수집, 관리되고 있다⁹⁾.

국가가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동원을 위한 것이다. 즉 인력동원과 납세를 위한 것으로 군사적 목적과 국책공사를 위한 인원 파악을 위해 정보수집과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형토목공사를 위해 주민들에 관한 기초조사와 집계기 이 이뤄졌고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 그후 19세기 유럽에서는 이미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폭력성의 노골화와 감시의 필요가 '정보사회'를 만들었다고 기든스는 주장하였다(Giddens, 1985). 한 마디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Beniger, 1986).

9) 사회적 감시는 첫째, 1996년에 내무부에 의해 시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시행계획이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처럼 여러 정보시스템에 산재한 다양한 다종의 개인정보를 모아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기록통합(record integration), 둘째,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시스템에 수록된 파일을 결합하여 정보자료사이의 동일/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컴퓨터 매칭(computer matching), 셋째, 특정 성향 소지자의 과거 행위 양식을 모형화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리된 자료를 연결시키는 컴퓨터 프로파일링(computer profiling),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장악하게 된 정보 기구의 획기적인 감시능력의 확대와 적용방식을 들 수 있다.

1997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성추문 수사가 지지부진 끝에 급진전된 것도 두 남녀의 '부적절한' 구체적 관계를 묻는 미 대통령관저 전직 비서(린다 트립)의 전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밀리에 녹음되고, 사건 주체인 인턴 여직원(모니카 르윈스키)이 대통령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이 확인되면서부터였다. 물론 이것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전화 도청으로 범죄요건을 구성한다. 이것이 폭로되기 전까지 이들간의 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제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시민이 누려야 할 정보권에 국한하여 논의해보자.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권리는 19세기말의 '홀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alone)로부터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신을 통제하는 권리'까지 그 권리내용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Warren and Brandeis, 1890 등).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침해행위에는 다음 네 가지의 복잡한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진다(William, 1960). 1) 도용: 성명이나 초상화처럼 사적인 것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침해: 개인의 은둔지에 침입하는 행위 3) 사사로운 문제의 공개: 타인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4) 공중의 오인: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공중의 눈에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 그래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타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짓는 권한'이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하는가를 스스로 결정짓는 권리'라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Alan, 1967).

197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확대로 선진 각국은 스웨덴의 데이터법(1973년) 제정을 시작으로 미국의 프라이버시법(1974년), 뉴질랜드의 컴퓨터센터법(1976년), 서독의 데이터 처리시 개인데이터 남용방지에 관한 법, 데이터처리, 데이터 파일 및 개인데이터 남용방지에 관한 법(1977년)을 제정했다. 1978년에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1979년에는 룩셈부르크, 1981년에는 아일랜드, 1982년에는 캐나다, 1984년에는 영국, 1987년에는 핀란드, 1988년에는 일본이 유사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장근복 외, 1999).

한국에서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제한을 엄격한 법의 절차를 거쳐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1993년)하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¹⁰⁾. 이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1994년)하

고 이듬해에는 컴퓨터 범죄 등 신종 범죄 처벌을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는 비밀번호 파일조작 및 사용자 계정번호의 도용은 비밀침해죄, 예금절취, 컴퓨터 사기행위, 각종 유형의 크래킹 등은 정보처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데이터의 부정조작이나 위조 또는 변조 등의 행위는 컴퓨터 사기죄와 같은 범법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형법 개정안에는 전자기록의 위작(偽作) 변경(變改) 및 컴퓨터 사용사기와, 업무상 비밀누설 및 신용훼손의 처벌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외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국가업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사생활 침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안문석, 1999).

1) 개인에 대한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나이나 성별, 전과사실 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이다. 그 개인은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상의 손실을 입었다면 명백한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조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금전상의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2) 자료의 입력은 정확하게 되어 있으나 자료의 이용이 자료와 관련된 개인의 승낙이 없이 이루어져 개인에게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자료 자체의 이용에만 정보제공자의 승인이 국한된 경우와 여러 곳에 산재한 자료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승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협의의 승인 원칙은 선진국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후자의 광의의 승인 원칙은 개발도상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잘못 입력된 자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열람청구권(12조)과 정정요구권(14조)이 보장되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자기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나 잘못 또는 불완전하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배제할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10) 여기서 감청(監聽)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법은 개인정보에 한정하고 있고 법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법의 관리능력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민간의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히 정보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률들의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관련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대상을 본인, 세대원 또는 본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 법률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내용 공개를 한정하고 있다.

3) 형법 제 184조: 의사, 변호사 등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 및 신용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4) 의료보험법 제 71조의 3, 제 75조: 보험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5) 증권거래법 59조, 제 208조: 증권회사 종사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누설 금지가 규정되고 있다.

6)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 4조, 12조: 금융거래 관련 자료 정보의 제공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7) 신용카드업법 제 14조, 25조: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업무목적 외의 사용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제공,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런 규정의 명목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그 빈도와 정도에서 더 높아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첫째, 정보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의도적인 권리침해가 점증하고 있다. 1991년에만 국가행정전산망의 정보관리 소홀로 전국 동·읍·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사항을 뽑아내어 독신녀 거주 가택을 골라 강도와 절도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가한 사건, 군청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청으로 부동산 관리 전산망에 입력된 토지대장상의 지목(地目)을 불법 변경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거래의 대가를 챙긴 사건, 경찰공무원이 공안망을 통해 대형 채권공갈단에 채무자들의 신상명세를 다량 유출시켜 공갈단이 이를 악용하여 거액을 갈취한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 윤석양씨가 폭로한 군 정보기관의 대민사찰 전산자료

는 '공안전산망'의 실체를 극히 일부나마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개별 국가차원의 수사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노골화되고 있다. 1997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업체(컴퓨터통신기업 포함)가 수사기관에 넘겨 준 자료는 1995년에 10만 8천 90건, 1996년에는 전년대비 33.8% 증가된 16만 2천 8백건에 달한다. 이 개인정보와 통신내역은 경찰청으로 전체 79.33%에 해당하는 12만 9천 1백 58건, 검찰에는 2만 6천 2백 13건(16.1%), 국가안전기획부에는 4천 1백 90건(2.6%), 국군기무사에는 3천 2백 53건(2%)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었다(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 모임 사이버 권리팀, 1998). 또한 1997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2천3백 회에 걸쳐 3천5백 여 개의 휴대폰 무선호출 음성사서함 비밀번호가 정보통신부의 관련 지침을 잘못 전달한 탓에 관련 업체에서 사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또한 긴급 감청 목적으로 5백50여 개의 비밀번호가 제공되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 목적의 감청인 경우에도 허가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법원의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감청 전용회선을 철거하지 않았고, 관련기관은 이를 위한 시설구매에 비인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¹¹⁾ 한 야당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한 정보기관의 도·감청 시설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 과학보안국(제8국)은 2청 10과로 구성되어 300명의 하루 4교대로 24시간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 6과는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감청을 하고, 운영 7과는 국내 인사와 해외교포, 외국 방문객의 국내 통화를 감청한다". "휴대폰 감청의 경우 반드시 광화문, 혜화, 목동 등 관문전화국을 거쳐 발신되므로 이 전화국의 단자판(MDF)에 주파수 해독기(컨버터)를 부처 8국과 자동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¹²⁾

셋째, 상업목적의 사생활 침해가 일반화되고 있다. 도청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

11) 1998년 11월에 있었던 정부기관의 감청분야에 대한 감사는 1948년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그 동안 국가정보원, 검찰, 국군기무사 등은 관련기관 법 등에 의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12) 이런 주장에 대하여 관련 인사들은 기술적 문제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한다. 보통 디지털 핸드폰 감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핸드폰 감청 방법과 가능성은 정지된 목표물에 대한 감청, 지역 감청, 추적 감청 등의 세 방법이 있으나 한국의 정보기관 들은 대개 '유선 감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통신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야당의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도감청 시험을 통해 단말기의 일련번호와 가입자 번호를 알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은 "8국이 방첩 통신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며 몇 십 명만이 합법적 감청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한겨레신문, 1999. 10.).

생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4개월 동안의 특별단속 수사 결과(1999년 9-12월)는 불법도청 131명, 도청기 수입·제조·판매·유통 68명, 개인정보 유출 74명, 기타 140명으로 나타났고 피의자들의 직업유형은 심부름센터가 169명(40.9%), 자동차 정비업소 73명(17.7%), 전자통신장비 판매업 70명(16.9%), 이동통신기기 판매업 21명(5.1%)의 분포를 보였다.

넷째, 체제간, 국가간 경쟁과 대결이 정보 수집 욕구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관련기관에서는 예산증액과 인원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언론홍보 게임 또는 일부러 사고내기를 시도한다. 전국가적 차원의 정보수집기구로는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국(CIA) 뿐만 아니라 국가정찰국(NRO), 국가안보국(NSA)이 군사정보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정보도 수집,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밀리에 수집된다는 5% 정도의 분량이 일상적인 통화나 전문 등을 도청하고 감청을 하는 데서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에셀론(Echelon)의 경우 12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도청시스템이 작동하여 시간당 수 십억 건의 분량이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다른 아시아지역에서 수집되며 연간 운영비만 150-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통신 감청능력은 강력한 음성 인식기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통해 수신된 국제전화, 팩스, 전자우편, 무선 통신내용을 입력된 주요 단어나 메시지 형태로 검색하여 테러 범죄 등의 증거를 색출, 확보하는 것이다¹³⁾. 프랑스도 이에 대응하는 일명 '프렌셀렌'(Frenchelon)이라는 도청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 언어연구소의 한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3년 동안 '의미의 숲(Semantic Forest)'이라는 국제 도청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성능향상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

13) 비행기의 사다다리형 편대를 지칭하는 이 프로젝트 P-415로 알려진 에셀론 통신도청 시스템의 가입국이 되면 이 시스템에서 입수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 1 가입국에는 미국과 영국, 제 2 가입국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제 3 가입국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과 일본, 한국, 터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1976년부터 이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망을 추적해 온 스코틀랜드 출신의 기자인 던컨 캠벨은 1988년에 에셀론 시스템을 처음 폭로하고 이어 1998년 1월, 유럽의회에 제출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남용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1948년 공산국가들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용으로 창설되어 1970년대에 지금과 같은 정교한 체제로 발전하여 정치, 경제, 군사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0. 3.). 정보수집대상에는 국가원수, 교황, 왕족, 국제인권 및 환경단체, 정치인, 기업인 등을 망라하고 무기거래나 각종 국제무역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NSA에 대해서는 <http://www.gwu.edu/~nsarchiv>를 참조. 에셀론에 대해서는 영국 인디펜던트지 홈페이지를 참조.

터넷의 검색엔진처럼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음성이나 문서를 찾아내어 도청하는 소프트웨어로 각종 자료를 대상으로 시험해 본 결과 검색능력은 1997년도에 19%에서 1년만에 27%로 향상되었으며 단어뿐만 아니라 일상회화처럼 길고 평범한 문장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⁴⁾.

이밖에도 전자감열, 사이버섹스, 불건전정보, 사이버범죄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현실이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재산권과 공유재산권운동과 같은 실용적 문제도 여전히 남겨진다¹⁵⁾.

V. 정보기술에 대한 대안 가능성

이런 기술적 위협과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신기술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기술체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신기술이 출현하였을 당시, 이러한 기술 거부운동(Luddite)이 대두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사용회피는 이미 정보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하여 실기(失機)한 측면이 크고 적시라고 판단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회피를 이용자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아니면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마냥 개발하는 기술주의에 영합하는 길이 없지는 않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기술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의 성격을 띠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 역의 경로를 되짚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기술과 사회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자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접근을 위해서는 과연 '사이버공간이 해방지대인가'라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14) 이 기술의 개발의 참여했던 인사들은 국가안보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의미의 숲'의 존재를 확인해 준 미 국방성 유출문서의 파일이름은 'nsarev.pdf'로 nsa는 미 국가안보국을, rev는 개정 또는 수정의 약자로 사용되는 것이다.

15) 인간의 지식은 역사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원이다(CPSR, 1992). 저작권(Copy Right)에 대응하는 정보공유운동은 GNU(GNU Project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나 Linux와 같이 카피레프트(Copyleft)로 구현되고 있다.

16) 여기에는 기술시민권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과학상점운동, 참여설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사회적 방어 등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치행동이 현실세계의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참신한 정치가 가능한지, 사이버공간의 정치는 현실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잠재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기술적 잠재성의 사회적 실현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결과에 있다.

그리하여 정보민주주의는 정보접근권의 보장,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접근과 다른 의견의 진술과 비판할 권리의 보장과 대안정책이나 의견의 제출 권한 부여,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공공영역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CPSR, 1992).

발로우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나 포스터와 같은 탈근대화론자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해석은 사태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Barlow, 1996; Poster, 1994, 1998).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해방공간으로 보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실의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도 가치가 있는 세계가 가상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현실세계의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한 뿌리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윤영민, 2000).

탈근대화론자들도 정체성의 재구성, 경계의 붕괴와 권력의 탈중심화로 정치의 해체를 예견하고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현실정치의 종말이 온다고 봄으로써 그들의 논의는 현실적 합성을 갖지 못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해서는 전통적 사회과학이 더 정치적 함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적 전망을 단순히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윤영민, 2000).

시민권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매개집단(intermediary groups)의 강화론을 제시한다. 사이버공간이 정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증가시키고, 일반시민들의 자연발생적 공공토론을 증대시키며, 시민사회단체(활동적 시민 포함)의 공론 활동을 강화하고, 현안집단(issue groups)의 활동에 기여할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시민단체나 국제기구의 대안도 경청해 볼 만 하다¹⁷⁾.

17) 시민단체로는 전자주민등록증과 같은 스마트카드 반대운동을 성공시켰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www.pi.o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EPIC), CPSR 이외에도 Electronic Frontier Fountain(EFF),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CDT), APC(http://www.apc.org, http://www.CFP2000.org) 등이 있다. 국제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지침(1980)에 제시된 8대 원칙(정보수집의 제한, 정보의 질, 목적 구체성,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정보주체의 참여, 책임의 원칙)이 있다.

성찰교육과 정치과정의 미래를 정의껏 제시하고, 자칫 야기될 수도 있을 정보화사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치유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섬세한 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¹⁸⁾.

성찰적 정보기술교육을 위해 각종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 기술이 가져 올 혜택의 적정성 여부, 기술이 갖는 철학적, 정치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편향, 낡은 기술과 새로운 정보기술간의 경쟁 유무뿐만 아니라 기술결정론, 사회문화결정론, 사회구성주의, 기술의 각종 역기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좋은 기술은 좋은 기술을 낳는다는 망상을 갖게 한다든지 도대체 좋은 기술이란 존재할 없다라고 단언하는 부류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성찰적 사회이론의 정립은 낡은 패러다임의 축에서 벗어나 이미 일과성 유행의 주류담론의 맹점을 간파하는데서 시작된다.

근대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듯이 정보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가상공동체가 형성되어 시민권력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한 정보화 노력이 시민사회나 사회성원 등에 의해 원래의 목표-삶의 질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또는 공동선의 실현 등을 구현하는데 기술도입과 사용의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좋은 선진기법도 한국사회의 맥락을 거치게 되자마자 종종 왜곡과 굴절과 오용의 역사를 거친 '불행하고 안타까운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학계에서도 산업사회 또는 근대사회에서 정보사회 또는 탈현대사회로의 이월(이행)과정, 즉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이용, 실현과정에서 사회학의 고전적 핵심어인 계급관계라든지 권력관계 등이 과연 해소될 것인지 재생산될 것인지에 대한 고찰과 토론이 진지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정보공개, 정체성의 재구성, 경계의 붕괴, 한 마디로 내파(implosion)가 진전되면 사회변화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로가 재설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파를 가져오는 추동력(prime mover)은 무엇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 패권(English hegemony)이 주도하는 인터넷 콘텐츠(contents), 미국인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 초국적기업의 독과점 등 정보기술영역만 하더라도 한 민족사회의 내파나 자율적 변화를 거스를 흐름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인 현상이 너무나 우리 곁에 다가와 있고 서로 뒤섞여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조밀한 네트워크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는

18) '성찰적'이란 영어 'reflexive', 또는 'reflective'의 번역어이다. 원래 이들 단어는 '반사적, 재귀적'이라고 번역되며 '행위자의 행동 결과가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함의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반성적 숙고를 포함하는 의미로 '성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점이다. 특히 컴퓨터 통신기술 의존사회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대두 등 인간이 가진 윤리적, 도덕적 대응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빈약한 점도 내파의 적극적 효과와 긍정적 영향을 감쇄(減殺)하는 작용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사회적 통제를 가일층 현실화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근복 외 7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국제사면위 한국연락위원회, 1988, 『인권이란 무엇인가』 물레
 고영삼, 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고영만, 2000, 「정보사회의 패러독스와 인터넷」,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 1 회 인터넷이 인
 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술대회 발표문(5. 19-20).
 김병목·윤명선, 1987, 『인권과 역사』, 형설출판사.
 모리스 크렌스틴(황문수 역), 1981, 『인권과 자유』, 문예출판사.
 볼프강 후버/하인즈 리트(주재현/김현구 역), 1992, 『인권의 사상적 배경』, 대한기독교서회.
 송성수 엮음, 1997,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스키하라 야스오(杉原泰雄)/(석인선 역), 1995, 『인권의 역사』, 한울.
 신동이편집실, 1980, 『세계의 인권선언』, 동아일보사.
 안문석, 1999, 『정보체계론』 3판, 학현사
 엘리네크/부르미(김효전 역), 1991, 『인권선언논쟁』, 법문사.
 오호택, 1988, 「인권선언의 역사적 전개」, 고대 석사논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윤영민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장호순, 1998,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1998, 『사이버권리백서-세계 인
 권선언 50주년 기념에 부쳐』
 조동기, 1998,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학회 엮음,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세계사, 440-441쪽

- 최윤진, 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 카렐 바삭 編(박홍규 역), 1986, 『인권론』, 실천문학사.
- 코마스 버젠탈(양건/김재원 역), 1992, 『국제인권법개론』, 교육과학사.
- 크리스찬 아카데미 시민사회 정보포럼 편, 1999,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 대화출판사.
- 마크 포스터/김성기 역, 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 마크 포스터/이미옥 외 역, 1998, 『재미디어 시대』, 민음사
- 최갑수, 1998, 광주항쟁 20주년 연구자료
- 한경희, 1998, 당산철교 철거논쟁의 과학사회학적 접근, 추계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
- 한상범, 1985, 『기본권인권』, 정음사.
- 한상진 외, 1996, 왜 동아시아인가,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계간 사상』, 겨울호, 사회과학원.
- 한상진, 1996, 「서구의 인권담론과 동아시아문화-동서양의 대화의 추구」, 추계 한국사회학 대회 발표문.
- 허상수, 1999, 시민사회와 정보기술: Y2K문제의 사회학,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동향과 전망』, 박영출판사
- 허종범, 1999,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분석 및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 Alan, F., 1967,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 Barlow, John, 1996, Declaration of the Cyberspace, <http://wcnet.org/~skreien/bw.html>.
- Beck, Ulrich, 1990, *Risk Society*, Sage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새물결]
- Beniger, J. R., 1986,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I. Brownlie ed. 1981, *Basic Documents on Human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1992, *A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Platform*, Peace and Justice Working Group, CPSR Berkeley Chapter. <http://www.cpsr.org>
- Davies, Simon, 1996, *Big Brother: Britain's Web of Surveillance and the New Technological Order*, Pan Books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Vintage.

- Giddens, Anthony,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Polity Press.[안쏘니 기든스/진덕규 역, 1994, 『민족국가와 폭력』, 겐지사]
- Hughes, Thomas R., 1983, *Networks of Power: Electrification in Western Society, 1880-1930*,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untress, Jon, 1998, Computer Problems Similar to the Millenium Bug that have already happened, <http://www.year2000.com/archive/similar.html>.
- J. Locke, 1965,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ed. P. Laslett (New York: Mentor)
- Lyon, David, 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Basil Blackwell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McGinn, Robert E., 1991,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Prentice Hall
- MacKenzie, Donald. 1981, Notes on the Science and Social Relations Debate, *Capital and Class*, 14(Summer), pp. 47-60.
- Lewis Mumford, 1964,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Technics, *Technology and Culture* 5, pp. 1-8.
- Rosenberg, Nathan. 1982,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an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en S. and L. Brandeis,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No. 4.
- Webster, Andrew, 1991,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Macmillan Press Ltd.
- Westrum, Ron. 1991, *Technologies & Society: The Shaping of People and Thing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illiam, 1966, The Right to Privacy and American Law, (isrd.nca.or.kr/BBS/info/iip/1996/3-14/focus1/1fo3-14.html)
- Winner, Langdon. 1980, Do Artifacts Have Politics?, *Daedalus* 109, Reprinted in Donald MacKenzie and Judy Wajcman, eds.,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 How the Refrigerator Got Its Hum*, Open Uni. Pr., pp. 26-38.

From Housing Needs to Housing Rights in Korea

Seong-Kyu Ha*

I. Introduct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housing conditions for the lower income groups in Korea have improved since Habitat I in terms of affordability, tenure, and housing rights. It was listed along with South Africa, (in the Berlin 1987 Habitat conference) as one of the two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evictions by force are most brutal and inhuman. The poor were forcibly removed in many redevelopment project areas. In many cases groups of thugs were brought in to demolish the houses and push the people out.

With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joined the body of international, universally applicable and universally accepted human rights law. Since that time this right has been reaffirmed in a wide range of addi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each of which are relevant to distinct groups within society. No less than 12 different texts adopted and proclaimed by the United Nations explicitly recogniz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ing the 21st century, the whole globe has been trying new efforts for a 'sustainable social development' and 'elevation of quality'. All these efforts were seen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Director,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particularly Habitat I and II Agenda, during the past 2 decades. Since 1986 a series of resolutions have been adopted by various UN human rights and other bodies on the issues of housing rights. These resolutions are extremely important documents, as such of them forms the legislative and political basis for instigating a broad range of activities within the UN bodies housing rights and forced eviction.

We do not believe that Korea has taken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housing rights yet with respect to the legal obligations of governm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made every efforts to remove all impediments hindering attainment of these goals of housing rights through explicit legislation.

In Korea, major civic groups are involved to one degree or another with the legal struggles for housing rights and against forced evictions. The number of groups basing housing-related struggles on legal sources is growing rapidly, through a reliance both on the constitutional law, as well as increasing refere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ecognizing housing as a human righ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ssues of housing rights in Korea and to seek the role of NGOs and CBOs for the future.

II. Housing Needs and Substandard Settlements

When housing is defined as a social good or social necessity, on the other hand, one speaks of *housing need* rather than demand. Housing need, broadly defined, refers to the inadequacy of existing housing condition when compared with some standard or norm¹⁾ of what is socially acceptable (Cullingworth, 1960). In theory estimates of housing need, unlike those of demand, take on notice of price or of market performance. In practice, however, the question is not as straightforward

1) Housing norms: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housing in a culture. Housing norms help explain why particular types or components of housing fulfill needs of different types of households

(Bourne, 1981). In Korean context, however, housing needs can be defined in several ways: such as in terms of (1)affordability(based on income), (2)suitability (based on dwelling size or design), (3)adequacy(based on state of repair), and (4) security of tenure(based on evictions and discrimination)

There is growing awareness that excessive concern with economic development as the remedy for under development problems in Korea has overshadowed the socio-cultural basis of development. It was relived that economic development w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other sectors as well, including socio-political sectors.

The above mentioned way of thinking is at best a half truth. The other side of the coin, a sad story from development experience in Korea, is that the benefits of economic growth were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existing unequal social structure. Those who belong to the elites, who have power, both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superiority, got the benefits. The have-nots got little, if anything.

Housing is a major social problem in Korea in terms of the conditions in which many people live and the allo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all segment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know the nature, scope, and cause of the problem, as well as the people who are affected.

The housing stock is the total of all housing units within Korea and may be described in terms of location of housing units, quantity and quality of housing units, and how well it meets people's needs. The quantity of houses has always been below the number of households; growth in households has outpaced the growth in available dwellings. The housing shortage has been particularly acute in the urban areas because of the accelerating urbanization ratio, which drastically increased from 41.2% to 78.9% in the period of 1970-1995.

By almost any touchstone, the overall quality of housing has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the 1970s.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since the 1970s has been accompanied by improved housing quality. The average dwelling size increased rapidly and the proportion of dwellings equipped with modern kitchens and flush toilets steadily increased. The average number of persons per room decreased from 2.3 to 1.1, and

per capita floor space increased from 7.9m² in 1975 to 17.2m² in 1995.

Despite overall improvement in housing quality, many substandard dwellings remain. Dwelling unit size is conventionally defined as the number of rooms or floor area. In squatter settlements the 1989 average number of rooms was 3.5 and the average floor area per dwelling was 61 m²(18.35 *py Ong*), both much smaller than the average for Seoul. Moreover, the number of households per dwelling unit - a useful index of involuntary sharing - was markedly higher in substandard housing areas at 2.2. However, over 1.3 million urban households, equivalent to 13% of all urban households in 1995, are on average still using only one room for their whole family of 3.7 persons.²⁾ Residents of squatter settlements endure an appalling lack of basic services.

By far the most publicized housing issue is that of rapidly increasing housing prices and rents - in a word, the problem of "affordability". According to the Korea Housing Bank, housing prices rose faster than consumer prices for the last two decades but the rate of increase varied greatly(Korea Housing Bank, 1995). Housing price hikes peaked in the late 1970s and once in the late 1980s. The rapid increase in the late 1970s was largely due to housing speculation in Seoul: in 1979 housing prices increased 73.7% (KRIHS, 1981, pp. 35-50). In the late 1980s, however, housing prices soared again. Apartment prices in Seoul more than doubled between December 1987 and March 1989 (Maeil Business Newspaper, December 12, 1989). One of the most common measures for housing affordability is the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PIR), i.e. how many years' income is needed to purchase a house. The PIR for Seoul measured 9.38 in 1991, nearly twice the world average of 5, while the RIR (rent to income ratio) reached 35 %, compared to the world average of 18% (The World Bank, 1992, pp. 25-35; J-H, Kim, 1994).

2) The basic service with the lowest standard of provision is toilet facilities. A majority of housing units(80.5%) had conventional facilities, such as a pit latrine. But 10% of housing units had neither a private toilet nor even a communal toilet (Ha Seong-kyu 1994). Such housing conditions fall below a level that most people would consider tolerable, much less comfortable.

Korea has an unusual tenure system, consisting of owner-occupancy, *Chonse*, monthly rent and others(Table 1). Owner-occupancy is the traditional form of housing tenure in Korea. Although owner occupancy in the country as a whole has declined from 63.6% in 1975 to 53.3% in 1995, this was mainly confined to urban areas. Reasons for the drop in owner-occupancy was urbanization and financing problems.

Table 1. Housing Tenure in Korea (1970-1995)

	Whole country				Urban Areas			
	1975	1980	1990	1995	1975	1980	1990	1995
Owner Occupied	63.6	58.6	49.9	53.3	44.8	43.0	40.5	46.2
<i>Chonse</i>	17.5	23.9	27.8	29.7	31.2	35.5	34.6	35.3
Monthly Rent	15.6	15.5	19.1	14.5	21.9	19.9	22.5	16.6
Others	3.3	2.0	3.2	2.5	2.1	1.6	2.4	1.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ource: Economic Planning Boar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1970- 199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1997.

Table 2 lists the different kinds of rental types and rental housing that are commonly used by low-income groups. With respect to the income level of different tenure types, homeowners earn relatively higher income than the rests of tenure groups. The lowest income households are found with the *Sakwolsae* arrangement. *Chonse* households in large cities are relatively better-off, earning income higher than other rental households.

In Korea, there is a considerable range of rental sub-market. Central city areas or the areas immediately surrounding them often retain tenements or other forms of cheap rental accommodation. *Ilsei*(*Zzongbang*) is the daily rent system. This is a new type of rental housing or accommodation for the lowest income group. In large cities, declines in the purchasing power of many lower-income households formal sector worker households have encouraged many to rent out rooms in their own houses to supplement their incomes and to help them pay off loans on their house. In most instances, the problems are a lack of facilities for washing and food preparation and

Table 2. The Different Kinds of Tenure Types and Rental Housing by Low-Income Group in Korea

Types of Tenure and rental accommodation	Commo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Chons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 renter makes a lump sum deposit of 'key money' at the beginning of occupancy which is fully refunded at the end of contract period. The landlord usually invests this fund and interest earning represents in imputed rent. ② Chonse is most frequent in cities and the proportion of chonse households has been growing since 1960s. ③ There are many kinds of Chonse detached house or room for various income group. But usually very overcrowded and in poor state of repair for the low-income Chonse. ④ Whole families often in one room, with much high density.
Bochungbu-wolsei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is is a kind of the security deposit with monthly rent. At the beginning of the contract period, the tenant makes a deposit which is refunded at the end of the contract, but he pays a monthly rent. In case of non-payment the rent is deducted from the deposit. ② In the low-income residential areas, the original building never had sufficient provision for high density of inhabitants in regard to adequate provision of water supply, ventilation, garbage disposal, etc.
Sakwolsei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is is a types of the declining Chonse. The tenant makes a onetime deposit from which a given amount is deducted. Hence the total amount of rent is the deducted amount plus interesting earning of the remaining deposit. ② Similar problems to above in terms of overcrowding, poor maintenance and lack of facilities.
Wolsei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is is the monthly rent system which is the ordinary system found in most countries. ② Similar problems to those listed above in terms of lack of facilities. ③ Building often very poorly maintained
Ilsei(Zzogba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Rented room, bed or bed hours inboarding or rooming house, cheap inn. ② These kinds of accommodation are usually very poor with several people crowded into each room and very inadequate provision from basic services. Usually relatively cheap and centrally located. ③ The quality of this housing is most in evidence near railway station or bus-station though they may also be common in other areas. Single person may hire room.bed) for a set number of hours each day so more than one person shares cost of each room.bed).

a complete lack of security.

With the over-concentra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capital region, the housing shortage has grown increasingly acute. A massive growth in illegal and substandard housing has been predictable result.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picture of the slums and squatter settlements, it will be useful to presen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ubstandard settlements. I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stages) of substandard settlement process in the capital region.

1) *Underground earth shelter(tomak): 1919-1945.*

To understand how the squatter settlement process began, we must go back to the beginning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s modern history. Under the colonial policy of exploitation, most farmers became financially bankrupt and were forced to relocate to either other major cities such as Seoul, or to various regions of Manchuria in China. During this period (1919-1945), most farmers migrated to Seoul and built underground earth shelters (T'omak) for much-needed housing. This unusual, yet substandard, housing type was widely practiced until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With respect to the population of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there were about 161,986 residents in substandard settlements, including Tomak, in 1941 (H-K, Kim and S-K, Ha, 1998, pp. 24-27).

2) *Temporary stacks of wooden board (Panjajip): 1945-1959*

An unexpected large group of returnees and refuge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from North Korea settled in Seoul following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control in 1945 and the Korean War in 1953. This resulted in mass movements to establish squatter settlements. Over a million persons displaced by war returned to the ruined cities. Finding no suitable housing, they built temporary shacks of wooden boards - so called *panjajip* and *panjach'on*. The original meaning of *panjajip* is a temporary house with a timber-framed structure; *panjach'on* indicates a settlement consisting of a number of *panjajip*.

3) *The poor's village of hillside(Daldongne, Sandongne): 1960-1980*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during the 1960s and 1970s, which was largely Seoul-centered, was accompanied by an enormous wave of migration from countryside to the city. Accurate statistics are not available, but in each of the two peak years of 1969 and 1970, following severe droughts in the south-west, probably as many as 400,000 people moved to the capital. The influx of population from outside the city created an acute housing shortage and price soared beyond the reach of the average citizen. There were many squatter settlements, *Daldongne* or *Sandongnaes* in small mountain and hillside areas in Seoul.³⁾ Squatters constructed their own hou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y government. All housing materials were of low quality and development was totally unplanne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iving in slums and squatter settlements (*Daldongne*) on hillsides varies from city to city, but figures of 20-30% were common in the 1960s and 1970s. Substandard housing has been most prevalent in Seoul.

4) *Vinyl huts(binilhaus) and a basement or garret (Beoljib): 1980s -*

Since the early 1980s, poor housing conditions, such as physical deterioration, lack of facilities and security, and overcrowding, have been associated with two kinds of new settlements, *Binilhaus* and *Beoljip*. *Binilhaus* (vinyl house) is constructed by thin wood board layers and vinyl covers on the outside.⁴⁾ *Beoljip* refers to various kinds of basement or attic residences in low-income housing areas. Most *Binilhaus* occupants are poor tenants who has been forcibly evicted from housing renewal areas.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to rent even a room in the low-income residential areas. *Binilhaus* squatters simply settled in vacant hillside areas or public open spaces

3) *Taldongne* literally means Moon village and *Sandongne* are the village on hillside or small mountain in Seoul.

4) A typical vinyl hut settlements in Seoul is *Kulyung*(구룡) village started in 1986. A Stream of evictees started to build so-called vinyl houses on privately owned land. There were 120 original households at the beginning. After the first year of settlement, many real estate brokers associated with local gangs built vinyl huts and sold them to the poor people during presidential elections.

without any rights of land ownership and building permits. And most of the *Beoljip* residents were low-income, unskilled labors who were employed at nearby manufacturing companies, so that this kind of housing was mostly located near industrial zones or factory districts.

It is clear that in Korea, particularly in urban areas, housing needs can be included low-income rental housing (especially *Bochungbuwolsai*, *Sakwolsai*, *Wolsai*), *Zzombang*, *Binilhaus*, and various squatter settlements. The housing rights issues in Korea have been raised in the areas of the poor's housing needs. Without tackling the problems of housing needs, it is very difficult to address the housing right issues.

III. Violation of Housing Rights: Evictions through Redevelopment Projects

Millions of poor people, or squatters, have been evicted in the past decade in Korea. In Seoul, 700,000 squatters were evicted, often violently, between 1985-1988. The government usually justifies evictions in two ways. The first is to 'beautify' or 'improve' the city. For instance, a major eviction program in Seoul took place prior to the 1988 Olympics(Table 3) (UNCHS, 1996, p. 245).

As the date for the 88 Olympics approached, the winds of eviction blew even stronger. Areas evicted directly because of the Olympics were located in 16 different dongs. Seoul City explains that this was necessary because these areas were near Olympic facilities or the path of the Olympic Torch, or visible from Tourists Hotels - and scenes of poverty should not be seen by foreigners (ACHR, 1989).

A second justification for evictions is termed 'joint redevelopment project (JRP)', which clear areas for new construction, such as public works projects and high-rise apartments. If settlements are judged to be illegal - even if they have been there many years - this is a convenient excuse to bulldoze them with no compensation paid to former inhabitants. Landowners or developers can make very large profits

from redevelopment projects.

Table 3. Recent Examples of Evictions

Location	Date	Persons evicted	Motive for eviction	Agent responsible for eviction
Argentina(Buenos Aires)	1991	1,200	illegal occupation	Landowner
Brazil(Sao Paulo)	1990-91	10,000	illegal occupation	Landowner & judiciary
Chile(Santiago)	1981-90	11,325	urban development	Municipality
Dominican Republic (Santo Domingo)	1987-92	180,000	500-year anniversary commemoration	Municipality & govts
India(Namada Valley)	1985-?	610,000	dam construction	Federal & state govts
Indonesia(Jakarta)	1991	29,247	urban renovation	Municipality
Korea(Seoul)	1983-90	720,000	Olympic Games	Government
Malaysia	1990	250	real-estate speculation	Municipal council
Myanmar(Rangoon)	1988-92	500,000	political control	Government
Nigeria(Lagos)	1990	300,000	urban renovation	Government
Philippines(Quezon City)	1988	60,000	urban renovation	Municipality
Sudan(Khartoum)	1987-90	500,000	ethnic discrimination	Federal government
Thailand(Bangkok)	1984-89	214,000	real-estate speculation	Municipality
Zimbabwe(Harare)	1991	2,500	Visit Queen Elizabeth II	Municipality

Source: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UNCHS, *An Urbanizing World: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19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246.

As of 1997, the government designated 281 areas in Seoul for these kinds of project. Since 1983, these projects have been completed in 133 areas and 148 areas are planned for redevelopment in the future. Of the houses in the projected areas, 60% are illegally built and most of them are very poor in terms of structure, material and facilities. Of the land in these areas, approximately 45-55% is owned by the state or the city (Ha, 1995). Thus, homeowners without their own land have to buy the land from the government.

In the 1960s and 1970s President Park Chung Hee tried to control the growth of the squatter areas. Thousands of families were evicted and relocated to edge of the city and beyond.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at this time forced thousands of

families to resettle in Kwangju Danchi(estate) 25km south-east from the center of Seoul. It was intended that eventually the estate would house 60,000 households, at the rate of 66 square meter (20 pyong) per households; in fact, when the program came to an abrupt halt in summer of 1971, roughly 27,000 households had been relocated in the area.

The crucial problem faced by the squatters originally relocated in Gwangju was the lack of employment. One of the basic requirements of job security for the average squatter is his knowledge of the people and special situations of his particular areas, especially if he is a vendor, small salesman, and cart puller. The severing of these location ties prevented him doing his job. The forced eviction and relocation program destroyed the squatter pattern of employment, while it provided no alternative. The location entailed a long journey to work and considerable daily travel expenses, which were obviously beyond their means.

In housing, the 1980s were dominated by the Joint Redevelopment Program. This program encouraged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in cooperation with house-owner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clear and rebuild areas occupied by the urban poor. Between 1985-1988, over 700,000 urban poor people were evicted, but only 10 % were admitted to the new housing that replaced their homes.

In the JRP areas, most evictions are of renters who refuse to move out of the areas. The economic reason for evictions is that the projects are intended to make profit for the developers rather th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 legal reason for renter resistance leading to evictions is that the laws only provide for compensation of property losses, but not compensation for loss of convenient location or informal communal support.

In order to forcibly evict resisting tenants, the homeowners association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hire an eviction agency. The hire gangsters or thugs move into the districts and create an atmosphere of violence and fear by their abusive language, and their threatening gestures

In the case of the Donam 2-3 redevelopment district in Seoul in 1996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contracted to pay an eviction agency \$2.8 million to evict

477 houses, which comes to US\$5870 per house. The estimate total sale value of those 477 houses was just \$ 1 million. The huge payment is in view of the savings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can make if the renters are evicted quickly. A one-month shortening of the eviction period can save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 620,000. In the case being cited the construction company agreed to pay all eviction costs for 6 months, but after that the eviction agency would have to pay, and after 8 months the eviction agency would have to pay a daily fine of 0.1% of the total eviction costs (ACHR, 1996). Let us take a closer look at the forced evictions in term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Some current eviction incidents are as follows (Seoul City Government, 1991; Murphy and Pimple, 1995; KCHR, 1996):

1) *Mokdong, Seoul (June 28, 1983 - September, 1989)*

One of the largest redevelopment projects in terms of scope and scale in Seoul. Evicted were some 39,000 residents (8,664 households). There were 2,359 buildings including 1,877 illegal houses. Most of residents were squatters in inner city and have been forcibly relocated into Mokdong since 1964. This was a Public Works Redevelopment Project which were entirely directed by the city. It met with strong resistance from both the homeowners and the tenants.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in the beginning that the purpose was to provide a large number of housing units (23,000) at a cheap price, the actual sales-price of the apartment wa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construction costs. The tenants in Mokdong could not dream of moving into one of these apartments and so in the course of one year they staged more than 120 demonstrations and 'sit-ins', demanding some kind of government plan or policy for room-renters.

The Mokdong redevelopment project was a kind of 'new town-in town' development in terms of providing housing, public facilities and its scale and population size. After the redevelopment, the Mokdong was accommodated approximately 120,000 people with 26,629 apartment units.

2) *Haengdang-2 dong, Seoul (Oct. 22 - Nov. 22, 1993, April 24, 1994)*

Evicted were some 2,500 families (about 10,000 people) who are mostly renters and squatters. Parts of land owned by the government; some is privately owned. Joint redevelopment was the reason for the eviction. The people resisted physically. The renters' organization demanded temporary housing and wrote petitions to government agencies, demanding the prohibition of evictions during winter and for temporary housing. These were rejected. Some people left but about 100 families are still in the place and are still fighting. In April, 1994, the thugs swung baseball and steel pipes wildly and used much violence in this redevelopment area for demolition. Through all this, some tenants were injured and their cloths torn and ripped (Hankook Ilbo, April 25, 1994).

3) *Dowon-Dong, Seoul (April, 1996)*

About 2,100 families lived in Dowon-Dong - 850 land and building owners, and 1,250 tenants - when the redevelopment work was started in April 1996 by Samsung Construction Co. The owners' association and Samsung Construction Co. paid huge amount of money to residents for 'moving expenses' and guaranteed them places in rental housing on the condition that they move to other areas. Of course the threat of violence by the 'removal service' gangsters was an integral part of this process. But 30 some tenants' families who were unable to move, demanded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housing, as provided in the 'Urban Redevelopment Law,' having heard of other redevelopment cases in which rental housing promised at the outset of redevelopment was converted to houses for sale, they did not trust the 'guarantee' of the owners' association and Samsung to provide them with rental apartments.

The constructors responded by mobilizing every possible measure to block the renters' activities, which posed an obstacle to their achievement of high profits. They used both violence and pacification: on the one hand they threatened the personal safety of the tenants and their families, and the other hand they offered them money to withdraw their demand for temporary housing. In order to force the tenants out,

the construction company employed the 'removal service' which has committed violent acts against the unarmed tenants, in number and scope beyond imagination (CCEJ, 1998, pp. 17-19).

4) *Cheongryang-1 Dong, Seoul (Sept. 1993 to Feb. 15, 1994)*

Evicted were 1,200 families (about 4,500 people) who were squatters and renters and who lived there for up to 20 years. The reason for the eviction was the joint redevelopment of the place. The affected people resisted and violence broke out; 130 people were injured, 72 persons arrested.

5) *Miah-Dong, Seoul (Mar. 26, 1996)*

Some 1500 families were evicted. The people were informed three months prior to the eviction for the joint redevelopment of the place. The people had lived Miah-Dong from three to 25 years. The renters demanded temporary shelter and public housing. Through the demolition, some 20 persons were injured and the people staged several stay-in strikes against eviction. The reason for the demolition was the joint redevelopment.

What is the socio-economic impact of JRPs? And who are the occupiers of new apartments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s? Why the low-income tenants failed to resettle in the same area after the projects?

(1) Squatter settlements are usually highly stable communities. Before redevelopment homeowners and tenants lived as close neighbours with a great deal of sharing and helping each other. But as soon as JRP begins they become enemies. The housing association spreads the word that the tenants are delaying construction which will result in financial losses to the homeowners. The homeowners attack the tenants both verbally and with physical violence and demand effective measures to drive them out.

In JRP areas, homeowners and marginal squatters (tenants) have conflict of interest about the eviction problems. They often come into conflict with ways of redevelopment and tenant eviction. The JRP destroyed the poor communities. It

is by no means evident that the poorest and most needy families are the principal target of the JRP. In fact, the major beneficiaries of housing renewal project, especially JRP, have not belonged to the poor. Such housing has, primarily, benefited the middle and upper income group.

(2) It is observed that the JRP has different impact on homeowners and renters. Some homeowners in JRP district become relatively well-off through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the tenants' organizations were set up in order to resist eviction and asking for compensation for eviction, but they are not politically influential. They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build social housing in the redevelopment districts for renting families. As the joint project began, housing cost and rent in the area went significantly higher. It was increasingly difficult for renters to find even an affordable rental unit due to a rapid increase in rental market.

(3) The project has been described as joint redevelopment since responsibility is shared by the association (homeowners' association)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enants are not eligible for the associations or an apartment in the new building. In 1988, They have given two months' living expenses, also called moving expenses, or ticket entitling them to buy one-third of a new apartment. This is not a feasible option, so the tickets are quickly sold. Since 1989, for renters evicted from urban redevelopment areas two alternatives have been offered: (1) Receive compensation for moving expenses (usually taken as 3 months salary, about \$ 3800) and find one's own alternative housing, (2) Receive the right to move into government rental housing when it is constructed on the project site.⁵⁾ The first alternative may seem like a large money to the tenants, but because of the steep rise in rent in the Seoul area, it is not sufficient for them to find alternative rental dwelling near the development site. Most of them have

5) After April, 1989, when the government promised public rental housing to tenants in redevelopment districts, only renters excluded from this compensation (due to less than 3 months residency), or those demanding on-site temporary housing have undergone forcible eviction. These comprise about 10-20% of all the renters.

to move outside the city. The second alternative allows residence in the same neighborhood, but there is a few provision for housing during the 4-year period during which the project is carried to completion. The actual result of the two alternatives is that the original communities are broken.

(4) There are many speculators who will pay a high price for a house in the JRP area which is very likely to be designated for redevelopment. Therefore, many of the homeowners are not residents, and have invested precisely to gain a large profit through redevelopment. All redevelopment areas have many real estate agents who advertize that they specialize in redevelopment transactions.

(5) The critical question is the reliance of housing policy and urban redevelopment in Seoul on the process of filter-down as the best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ing available to those of lower income. The public housing authorities believe that, as the total housing supply increase, vacated middle income accommodation automatically becomes available for the low-income groups, thereby easing housing pressure. It is, in fact, hard to demonstrate that filtering strategies in Korea encourage distributional equity. Clearly, a more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that reduced inequalities in income would enable the less well-off to consume a more equal share of housing resources.

IV. The Role of NGOs for the Housing Rights: Experiences and Prospects

Society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ors. They are the state, which has a coercive power; the market, which is dealing with the production and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maximization of profit; and voluntary activities, which are seeking neither coercion nor profit. In this threefold model, the "nonprofit/non governmental" sector represents the third (Hall 1992). In Korean society, although the nonprofit/nongovernmental sector has played a passive role under authoritarian rul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s have drawn a close attention to the role of this

sector in order to check the power of the state.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was a historic moment in that political democracy in the past had always been sacrificed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individual freedoms improved,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which created an autonomous space where voluntary associations could freely be organized. Most existing NGOs or civil society for housing came out after the democratic movement of 1987.

1. Housing Movements for the Low-Income Group

Housing movements in Korea can be categorized as residents movements and intellectual movements. Residents movements in Seoul were spontaneous ones pursued by abruptly mobilized residents groups (Kim, 1992, p.178). The well-known cases of residents movements in Seoul are the squatters' association of Sanggedong and Mokdong redevelopment areas. In contrast to residents movements, the intellectual movements are represented by the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e NGOs, particularl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CCEJ).

With respect to the anti-evictions and low-income housing, there are several CBOs and NGOs in Korea:①The Federation of Evicted People of Seoul(FEPS), ②The Federation of National Street Vendors(FNSV), ③The Kore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KCHR), ④The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KOCER), ⑤The Catholic Organization of the Urban Poor, ⑥The Pastoral Committee for the Urban Poor, ⑦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CCEJ), and ⑧The Kore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Urban Poor. In July, 1987 the FEPS, in short Socholhyop, was organized by groups of people who have had an experience of eviction in redevelopment project areas. The objectives of the FEPS are to assist each other in eviction cases and to solve other common problems and lobby government to promulgate policies that would solve the problems of the urban poor.

As one of leading NGOs in Korea, what the CCEJ has done so far in terms of the low-income housing is as follows: campaign for secure housing for tenants,

campaign for secure housing for 15,000 households living in the 'vinyl huts'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stops evicting people from their dwelling places without offering them proper compensation, and proposed alternative policies. The typical vinyl huts were constructed by thin wood board layers inside and vinyl cover outside. The CCEJ urban poor council and housing committee held public forums and various types of actions, such as a rally in fro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e to demand secure housing for the urban poor.

The Kore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KCHR), and several NGOs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stop demolition of existing low-income houses in view of the scarcity of affordable shelter. They have made many rallies and public forums strongly against government's policies toward low-income housing and redevelopment. NGOs for the urban poor are still asking the government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and social housing for the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 areas.

The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KOCER) worked in a number of slums in Seoul. The institute promotes a systematic method of training community organizers uplift the downtrodden by helping to build the poor's organization for power through an on-going issue solving processes. The community action division of KOCER conducts research on community-based civil movements. It also maintains close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which defend and promote housing rights, and the occupational rights of street vendors, construction day-laborers, and similar occupations of the poor.

The Korean NGOs and CBOs Forum for HABITAT II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95. The goals of the forum were to promote awareness to the public about Habitat II and to establish housing rights to the citizens and to bring the Local Agenda 21 to the community. The forum actively joined Habitat II NGO Conference in Istanbul, Turkey from May 30 to June 12, 1996. The forum composed of 15 NGOs and CBOs including KCHR, CCEJ and PSE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tc.

In view of the wide scale violations of housing rights by forced evictions in Korea, it was unanimously proposed that the South Korea be targeted for the first project

of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ACHR) regional action plan. An ACHR team visited Seoul on the eve of the 1988 Olympics. ACHR is the regional organization of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leading non-government world housing body. ACHR team's report was critical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A Fact Finding Mission is an information gathering as well as a social process requir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man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ACHR team, which included housing experts, parliamentarians and officials from several countries. The team also suggested the followings(ACHR, 1990, pp. 42-44).

(1) People should not be evicted until permanent alternative housing is prepared, and at least temporary housing should be provided.

(2) It would be helpful if ordinary people could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affect them.

(3) More use of community upgrading programs for poor areas would allow all people who want to remain in the area.

2. Organizational and Conceptual Problems of Housing Movements

The examples of NGO activities mentioned above lead to a number of key conclusions and observations with impacts on the future role of the NGOs in Korea. Firstly, NGOs and CBOs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loring ways to develop a more efficient process to maximizing grassroots participation and should be enabled to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The examples of NGO activities show how NGOs can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the struggle process of the grassroots. It is here suggested that some NGOs, particularly the CCEJ, need to re-emphasize their initial role as an accessible platform for grassroots groups' activities, rather than for other NGOs and professionals.

Secondly, Korean NGOs and CBOs need to organize programmes for international networking.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networking with overseas NGOs and CBOs is to search for more reasonable and sound policy alternatives and to induce reform

in Korean society.

Thirdly, the primary goal of NGOs and CBOs to improve housing rights through changing the laws and the system in our society is not sufficient in end itself. Ultimatel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storation of moral values which overcome greed and egoism, and the building of a sharing society.

Fourth, NGOs and CBOs must be link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into member-accountable structures that give the poor an effective voice in local and national policy action. Such linking would allow urban redevelopment to emerge as people-centered development by promoting a real social movement. In this regard, the ability of NGOs and CBOs' in Korea to fulfill this role has to be questioned. They are seemingly ill-equipped and yet insufficiently prepared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uch a large-scale bottom-up approach.

Furthermore, the residents and the CBOs have gone beyond mere fighting and have set up a movement striv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Community leaders of the urban poor have raised questions and problems challenging the overall movement for housing rights. According to their statements(M. S. Park, 1955, p. 22), the movement

- has an unclear concept of housing rights;
- is getting lodged into an eviction resistance movement, not able to broaden out into a housing right movement;
- is internally divided into different fractions, both within the neighborhoods and between the eviction resistance organizations;
- has no clear policy covering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after the residents achieve moving into temporary on-site housing;
- lacks of an effective political arm, lack of sophistication and flexibility that would facilitate compromising with the government; and
- has insufficient solidarity with other social movements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residents of squatter settlements and redevelopment areas engage themselves on their own in a struggle to gain temporary housing and

a guarante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beyond that, they are even forming production, consumption, and credit associations among themselves. To have the most unfavorable provisions of the redevelopment law amended, they formed a committee to promote initiative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ed a draft version of a modified redevelopment and housing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Aside from this, they have also broadened their demands to legally enforce several other aspect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which the government has not yet adequately provided.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it should be reminded here that a number of characteristic structural problems of the community action movement in Korea as identified in 1995 on a workshop on "Reflections, Perspective and Challenges to People's Movements" sponsored by the United Nations Volunteer(UNV), are still existing:

- insufficient systematization of education, both for community organizations and neighborhood residents.
- lack of continuity, concentration, and communication of strategies in the movement.
- lack of appropriate response to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among the poor.
- lack of a confidence - building perspective on local community action

V. The Enabling Approach

There were changes in the concept of what governments should do to improve housing conditions for the lower income groups in Korea. There are three distinct concepts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housing programmes: state provision; the 'enabling approach'; and 'leave provision to the market'(UNCHS, 1996).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late 1990s, the enabling approach is much more important than other approaches in term of role of NGOs and voluntary agencies. One of main reasons why the emerging paradigm of enabling approach seems so

attractive is that it not only conforms with but requires democratic participation. Moving from 'controlling' to 'facilitating', from 'providing' to 'enabling' and from 'giving' to 'empowering' is a timely attitudinal change.

The new approach gained strength throughout the 1980s, supported by some international initiatives. The first, promoted by UNCHS(Habitat), centered on the concept of the 'enabling approach' that was elaborated in the Global Strategy for Shelter. Here, the role of government was redefined to focus on managing the legal, regulatory and economic framework so that people, NGOs and private-sector actors were more able to produce housing and related services more effectively.

The Global Shelter Strategy laid down four requirements for national strategies (UNCHS, 1990):

- the definition of clear and measurable objectives;
- gradual reorganization of the shelter sector(including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shelter production)⁶⁾;
- mob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increased financial resources(including housing finance, rationalization of subsidies and cost-recovery);
- production of shelter and management of land, infrastructure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econd international support for a new approach to shelter policy in the 1980s and early 1990s came from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s interest in the enabling approach was already clear in earlier evaluation reports and policy statements, with a move way from investment in housing projects in the mid-1980s, to housing finance in the latter part of the decade, and on to urban management around 1985.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World Bank agenda included secure property rights, rationalizing subsidies, promoting cost-recovery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ducing shelter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exity, and promoting private-sector

6) Most national shelter strategies make explicit reference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public, private and third sectors in the shelter process, and to the role of government in creating and maintaining an 'enabling environment' within which people and private enterprise can build their own housing.

activity in all areas.

In many countries, NGOs have succeeded in identifying the successful 'ingredients' of credit programmes for housing and neighborhood development, but they lack the capital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low-income communities on a large scale. Although development from NGO initiatives to a government programme has often taken a long time a national fund does offer advantages to both government and NGOs. For NGOs, it offers a way to take their programmes to scale; for governments, they draw on models that have succeeded in implementing effective housing credit and neighborhood improvement programmes that also make maximum use of the communities' own capacity to invest, build and organize.

The enabling approach is associated with political reforms, especially democratization. Popular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now receive more official support than they used to. Civil society is also given a much greater role through NGOs, CBOs and citizens movements.

The 'enabling framework' developed in response to housing problems and the failure of conventional public-sector responses. The origins of the idea that government actions in regard to housing should concentrated on 'enabling' and supporting the efforts of citizens and their community organizations to develop their own housing goes back at least to the 1950s and perhaps earlier. The emphasis on 'enabling approaches' has received considerable support from the growing recognition that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structures are not only important goals of development but also important means for achieving such development.

To ensure progress in asserting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of poor and disadvantaged Koreans in terms of 'enabling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instituted:

- active participation of public, private, and nongovernmental partners at all levels to ensure legal security of tenure,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qual access to adequate, affordable housing for all;
- governments must accept the demands of poor communities as legitimate, and respond to them;

- There is urgent need to legally define a minimum level of housing - a housing "poverty line" - and to guarantee at least that level to all citizens.
- Evictions should be limited to absolutely necessary cases, such as people living in areas where their lives are in danger - for example, from flooding - or people directly obstructing vital public projects. People should not be evicted until permanent alternative housing is available, and at least temporary housing should be provided to those displaced.
- Reaffirming that the governments are legally bound to respect, protect and ensure the housing rights and related rights of citizens.

VI. Conclusions and NGOs' Role for the Future

Housing means not only a structure for shelter and sanctuary but also an assemblage of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the socioeconomic rights of the poor and disadvantaged groups in Korea, the following roles of NGOs recommended:

- Acting as a pressure group and for crisis intervention in specific problems. Actions taken include fact-finding missions and campaigns.
- Information dissemination: this happens at all levels. Providing community organizations to facilitate sharing of experiences at the community level and for members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 major forces affecting the urban poor.
- Facilitating experiences sharing and exchange among groups, especially among the grassroots and NGO groups.
- Support for the grassroots struggle for housing with an aim to develop the process that enables people to strengthen their own capabilities.
- Research on key issues and innovative initiatives in the region and community.
- Pay more attention to campaigns for formulating a "Basic Housing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all the people can secure an adequate housing for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for developers when in establishing various plans on housing and in carrying out development programs

which may have effects on housing environments.

- There is urgent need to legally define a minimum level of housing- a housing "poverty line" or "housing minimum standard" - ant to guarantee at least that level to all citizens.

References:

- 하성규, "삶의 자리와 주거권",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발언, 1993.
- 하성규, "최저주거수준의 보장과 삶의 질 개선",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2권, 1995.
- 하성규, "주거기본법의 필요성과 서울시 주택조례 제정 방향",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정책 구현을 위한 시민 공청회,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1989. *Battle for Housing Rights in Korea*, Bangkok, ACHR.
-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1990. *Urban Poor Housing Rights in South Korea and Hong Kong*, Bangkok, ACHR.
-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 Korea, 1996. *Evictions in Korea*, Presented in the ACHR Eviction Watch Meeting, Bangkok.
- Ban, S.W, Moon, P. Y. and Perkins, D. H. 1980. *Rural Development: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ne, L. S. 1981. *The Geography of Housing*, London, Edward Arnold.
- Brandt, V.S.R. 1982. "Upward Bound: A Look at Korea's Migrant Squatters," *Korea Culture*, Volume 2, Number 4.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CCEJ), 1998. *Civil Society*, No.3. May-June.
- Cullingworth, J. B. 1960. *Housing Needs and Planning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a, Seong-Kyu, 1995. "Policy Alternatives for the Urban Redevelopment Prgamme",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Vol.2, No.1.
- Ha, Seong-Kyu(ed), 1987. *Housing Policy and Practice in Asia*, London, Croom Helm.

- Ha, Seong-Kyu, 1994. "Low-income Housing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Cities*, Vol 11, No. 2.
- Ha, Seong-Kyu, 1998. "Housing and Poverty", in UNDP, *Combating Poverty: The Korean Experience*, Seoul.
- Haengdang-2 Dong Tenant Association, *News Letters*, 1996.
- Hall, John, ed. 1992. *Civil Society: Theory, History and Comparison*. Cambridge, Polity Press.
- Hankook Ilbo(Daily Newspaper), April 25, 1994.
- Kim, Man-Jae, 1992. *The State, Housing Producers, and Housing Consumers in Tokyo and Seoul*, Unpublished Ph.D thesis, Brown University.
- Kim, J-H. 1994. "Changing Perspectives for the Korean Housing Industr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an Era of Global Competition, Seoul: KRIHS.
- Kore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KCHR), *News Letters*, 1995-96,
- Korea Housing Bank, *Monthly Economic Review* 179 (May 1995), pp. 112-122, pp. 132-164.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81. *Studies in Housing Speculation*, Seoul: KRIHS. pp. 35-50.
- Maeil Business newspaper* 12 December 1989
- Ministry of Home Affairs, 1981. *History of Saemaul Undong*, Seoul.
- Murphy, D. and Pimple, M. 1995. *Eviction Watch Asia*, Bangkok,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 Oxburn, Phillip, 1995. "From Controlled Inclusion to Coerced Marginalization: The Struggle for Civil Society in Latin America." In *Civil Society: Theory, History and Comparison*, edited by John Hall, Cambridge, Polity Press.
- Park, Moon-Su (ed), 1995. *Reflections, Perspectives and Challenges to People's Movements*, Report on a Workshop organized by the 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 Korea Committee, February.
- Seoul City Government, 1991. *An Evaluation Report on Mokdong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 Skinner, R.J. and Rodell, M.J. 1993. *People, Poverty and Shelter*, London, Methuen.
-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Settlements, 1990. *The Global Shelter Strategy to the Year 2000*, Nairobi,
-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Settlements, 1996. *An Urbanizing World: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2. *The Housing Indicators Program: Extensive Survey/Preliminary Result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p. 25-35.

ENGLISH ABSTRAC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Case of the Pinochet Affair

Hyo-Je Ch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gal hassle of whether to extradite to Spain the General Pinochet, the former dictator of Chile, has marked a watershed in the 20th century histo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 Pinochet affair has brought home the fact that to find a way to rectify human rights abuses is as much a political endeavor as it is a legal rendering, the traditional domain of human rights practic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ree-fold. It reviews the historical origin, process and outcome of the Pinochet affair in the manner of a longitudinal case study. This i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the different acto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plicated area of legal, diplomatic and political maneuvering. Finally, a typology of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the affair is presented, which seeks to map out a theoretical template on which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human rights practice is discussed. It is argued that a political dimension, alongside the legal approach, should be a part and parcel of any human rights debate.

Key words: Pinochet, human rights, politics, political typology, NGOs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ition and its Incorporation in Korea

Chan-Un Park

Torture expert, Lee Geun-An, finally appeared before people long after disappearance from peopl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been seeking to bring him to justice for the last decade. However, they have failed to do so because there were many legal obstacles such as statute of limitation, which prevents him from being punished regardless of nature of crimes committed by him. Crimes Against Humanity (CAH) appeared to response this absurdity. Korean society has begun to look carefully at this new concept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Under this situation, this article is designed to introduce to Korean society several issues around definition of CAH,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last century, and how to incorporate this new concept into Korean domestic legal system.

Author articulates CAH's definition through Nuremberg and recent two ad-hoc international tribunals, and further 1998 Rome Statute. Through this analysis, author makes clear that historical evaluation of CAH has loosen requirements to constitute this crime so that this crime can be applied to heinou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out military or international character. However, minimum requirements to constitute this crime shall be systematic or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ivilians. According to this explanation, Lee Geun-An case can be sufficiently categorized as one of CAH.

Author also endeavors to list legal characteristics of CAH, recogniz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 CAH is one of certain offense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as universal concern for which any state has jurisdiction to punish. Second, statute of limitation cannot be applied to CAH. This kind of heinous crimes shall be punishable at any time without limitation. Third, CAH must be punishable so that CAH's perpetrators shall not excused in the pretext of national harmony.

Lastly, *ônullum crimen sine lege; nullum poena sine lege*(no crime without law, no punishment without law)ö principle shall be generally applied to CAH. However,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domestic practice have changed this principle from strict principle to loose. For example, CAH can be punishable without specific provis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once equivalent crimes are prescribed in domestic law.

Author finally articulates how to incorporate CAH into Korean legal system. International law includ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treated sam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Constitution, without which, however, international obligation cannot be properly implemented in domestic arena. Author stresses that special legislation, so-called Special Act against Crimes Against Humanity, shall be enacted to apply the above characteristics.

Keywords: crimes against humanity, universal jurisdic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AI and Human Rights

Daehoon Lee

Debates and clashes ov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initially proposed and discussed in OECD, represent a fundamental conflict in our understanding of economic globalisation today. One important way of critically looking at the conflict is through internationally agreed human rights standards. Critiques of this perspective often argue that the draft of MAI, by its emphasis on broadened rights of investors, poses serious breaches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at the governments involved in the discussion are irresponsible of their duties for not bringing this aspect to public attention.

The draft MAI guarantees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and liberty to foreign investors ever known in international treaties. If enforced, it would allow foreign investors to compete with domestic ones in all economic sectors. It would also make it impossible to stop foreign investors to buy up any kind of assets and enterprises including those in strategic or essential industries. National governments would be made unable to impose any kind of selective conditions against such investments. Companies would enjoy the right to sue governments if they find themselves treated differently from local counterparts, but governments would not be able to do likewise towards foreign companies.

MAI clashes with existing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in many aspects. In preparation of the draft, the primacy of human rights, as stipulated in the UN Charter, was thoroughly neglected. MAI includes some clauses that prioritise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ver the existing norms and rights of invested countries. This can lead to violation of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MAI does not allow any individuals to seek justice or remedy in case of his or her rights violated by an act of investment. MAI denies citizens' right to participation in policy formulation by shutting the discussion from public scrutiny from the beginning. MAI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y reducing the ability of a national

government to impose policies necessary for a particular national developmen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investors' power to intervene in the course. MAI can also be used to nullify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necessitate governments to enact special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rights of marginal groups. In these respects, MAI stands against the tradition human rights protection set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This clash is a good illustration of the unresolved conflict within modern universality-oriented human rights regim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all and the rights of some; e.g. the property rights.

Keywords: MAI, human rights, economic rights, universalistic value

The Human Rights Debate in Asian Perspective

Yeong-seon Cheo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nature of the Asian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nd contingen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several East Asian states in particular mounted a challenge to Western beliefs about human rights. Based on a successful economic growth and on the Confucian logic inherent in their tradition, East Asian states sought to redefine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by questioning the applicability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different cultural, economic and socio-political settings.

The logic of Asian style democracy has been used by Asian repressive states to support the trade-off proposition: that a certain degree of authoritarianism is necessary to make the hard political and economic decisions that produce a states spectacular growth, and that such growth will facilitat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history of human rights in East Asian countries offers no promise or proof that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ll be extended to citizens upon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goals. Authoritarian leaders have justified their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not only as a sacrifice necessary to ensure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ir economic growth strategy, but also a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Basing itself on an understanding of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on human rights practices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study concludes that if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does not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fter the country reaches a certain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n variou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cannot be justified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that human rights, a critical factor of desirable democracy, cannot be pushed aside until economic development is consolidated. In the same context, a country's economic policies should promote the rule of law and not the political interests of abusive governments.

Keywords: human rights, Asian state democracy, Korean history, economic grow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Sang-Soo Hu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ethe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will lead to enhancement of human rights in general. For this the paper briefly reviews literature on the general history of the human rights question, on the 'right to know' of information, an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essay also outlines some distinctive features related to the nature of technology, the problem with the technology determinism, and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found that surveillance society on the basis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highly likely to cause interference with individu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data. It is also identified that electronic tapping and eavesdropping, on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level, are causing seriou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t is argued that an alternative perspective should be called on to rectify the situation, which includes, among others, the empowerment of civil power, reflective education, and social control of technology.

Keywords: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human rights, information society, surveillanc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ivil power, social control of technology

한국의 주거빈곤과 주거권

하성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주거권에 관한 이슈들을 분석·점검하고 미래의 시민단체(NGO)와 주민단체(CBO)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한국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소득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빈민거주지역인 불량주택 재개발 대상지구, 비닐하우스, 쪽방, 노숙자들의 주거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강제철거로 인한 주거권의 침해사태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1987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Habitat 국제회의에서 남아공화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강제 철거하는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는 공공주택의 직접공급, 시장의 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권능부여적 접근(Enabling approach)을 모색해야만 한다. 주거권 NGO들은 주거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집단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실확인 작업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 교환, 주민 활동 지원, 주민의 자조적 노력 등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권 NGO는 빈민지역 사회와 문제지역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주거기본권 등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빈곤선 또는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주민참여형 활동의 전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주거권, 주거빈곤, 강제철거, 권능부여접근,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

인권·평화 관련 논문지문*

〈박사논문〉

- 고병헌, 1994, 平和教育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 김강운, 1996, 人權의 國際的 保障에 관한 憲法學的 研究, 원광대, 박사
- 김근보, 1994,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경북대, 박사
- 김열수, 1999, UN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증감원인과 성패요인 분석, 서강대, 박사
- 윤병운, 1998,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도덕적 의지와 평화, 중앙대, 박사
- 지봉도, 1994, 韓國平和條約締結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
- 하재환, 1995, 國際法上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
- 한혜숙, 1995, 兒童의 平和教育 프로그램 開發을 위한 基礎 研究, 서울여대, 박사

〈석사논문〉

- 강남기, 1994, 평화 연구의 패러다임 추구와 평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
- 강동연, 1996,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에 대한 一考察 : 四者會談 提議를 中心으로, 고려대, 석사
- 강수열, 1994, 形事節次上 被害者人權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
- 강신일, 1999, 被疑者의 人身拘束과 人權保障, 원광대, 석사
- 고제운, 1997, 아동의 인권 보장에 관한 법교육적 탐색, 한국교원대, 석사
- 고혜숙, 1999, 국제 인권레짐으로서의 UN, 서강대, 석사
- 공용득, 1999, 韓半島 平和體制 研究 : 4자회담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
- 권성호, 1998, 搜查節次上 人權保障에 관한 研究, 부산외국어대, 석사
- 권 일, 1994, 냉전후 유엔평화유지활동 연구, 고려대, 석사
- 권종필, 1999, 수사절차상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
- 김기원, 1997, 행정상 즉시강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
- 김기호, 1995,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소말리아 내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 순서는 저자 가나다 순임.

대, 석사

- 김기호, 1998, 인권의 철학적 기초와 정당화 논증에 대한 연구 : 존 롤즈의 인권 사상, 연세대, 석사
- 김동문, 1997, 停戰管理를 통한 한반도 平和體制 構築, 서강대, 석사
- 김명국, 1998, 犯罪搜查와 被疑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研究, 광주대, 석사
- 김문석, 1998,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강남대, 석사
- 김수진, 1999, 미국의 대중국 인권문제 개입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대응방식, 서강대, 석사
- 김영섭, 1998, 유엔 平和維持活動의 役割變化에 관한 研究 :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
- 김영숙, 1995, 행정상 即時強制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
- 김옥성, 1997, 北韓의 人權侵害實態에 關한 研究, 서울대, 석사
- 김유경, 1999,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 석사
- 김의태, 1998, 美·日·中·露의 外交政策과 東北亞細亞 平和問題, 경기대, 석사
- 김정만, 1999, 남북 스포츠교류와 남북한 평화정착, 연세대, 석사
- 김정수, 1997, 유엔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 평화유지활동(PKO)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김정현, 1998, 동화가 유아의 평화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
- 김주환, 1995, 아프리카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나미비아와 서부사하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 석사
- 김중창, 1993,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에 관한 연구 : 국제 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김진욱, 1994, 민주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연구 : 지역당구조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
- 김창완, 1998, 中國兩岸의 平和可能性 考察 : 양안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
- 김훈철, 1998, 누가복음에 나타난 平和思想 研究 : 누가의 특수자료를 중심으로, 호서대, 석사
- 노현철, 1999, 근대인권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인권개념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
- 류은숙, 1995,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정부 최초보고서의 분석, 연세대, 석사

- 박남희, 1999, 사회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
- 박동석, 1988, 南北韓의 統一政策과 平和統一展望, 조선대, 석사
- 박보영, 1999,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세대, 석사
- 박상준, 1997, 北韓의 停戰協定體制 破棄 企圖와 對應政策 및 平和保障 方案 研究, 고려대, 석사
- 박수진, 1997, 國際強行規範으로서의 人權保護條項에 관한 考察, 경희대, 석사
- 박지중, 1999, 聖經的 平和의 概念, 박지중, 안양대, 석사
- 박한빈, 1996,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석 : 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강대, 석사
- 박형민, 1997, 犯罪搜查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
- 박형일, 1997, 평화협정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전략 연구 : 4者 會談 適用可能性을 中心으로, 서울대, 석사
- 박혜명, 199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
- 배경내, 1998,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 배병국, 1996, 韓國의 尤엔 平和維持活動(PKO)에 관한 研究, 한양대, 석사
- 배순철, 1997,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미관계와 인권문제, 한국의국어대, 석사
- 백형조, 1994, 한국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 석사
- 서영만, 1996,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영만, 국방대학원, 석사
- 서 욱, 1995,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탈냉전기 변화추세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손정수, 1997,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손주환, 1996, 北韓 人權統制 實相에 관한 研究, 경남대, 석사
- 송민수, 1998, 인권과 교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
- 신수정, 1998,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 신은주, 1997, 西安事變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一研究, 숙명여대, 석사
- 신준식, 1995, 한국과 일본의 國際平和維持活動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 석사
- 심기우, 1999,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 양수용, 1997, 인권사상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 감리교신학대, 석사

- 연홍숙, 1998, 平和教育을 위한 葛藤解消 커뮤니케이션 教科課程 研究 : 初·中等學校 道
德 教科書를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
- 유영진, 1994, 국제연합의 정치·군사적 기능에 관한 연구 :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중
앙대, 석사
- 윤문섭, 1997, 신국제질서하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수립에 관한 연구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 윤성환, 1997,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유고 인종분쟁 해
결을 위한 UNPROFOR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윤원규, 1997, 동북아 평화체제 구성에 관한 연구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성에 관
한 한국입장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 윤종우, 1997,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변환 방안, 숭실대, 석사
- 이건락, 1995,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
- 이경수, 1994, UN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참여, 연세대, 석사
- 이경직, 1999, 4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이광희, 199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건국대, 석사
- 이국희, 1999, 평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유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
- 이남기, 1995, 현대 평화론의 선교적 이해, 한신대, 석사
- 이덕재, 1995, 범죄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경찰범죄수사를 중심으로, 국민대, 석
사
- 이동균, 1998, 인권 선교를 위한 연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통합)를 중심으로, 호
남신학대, 석사
- 이민효, 19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제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 이상욱, 1996,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研究, 연세대, 석사
- 이석호, 1999, 學校 人權教育 教育課程 構成方案에 관한 研究 : 初等社會科를 中心으로,
서울교육대, 석사
- 이영훈, 1998, 러시아의 대CIS정책에 관한 연구 : CIS역내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이익과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 이 인, 1995, 한국,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 석사
- 이일우, 1997, 한국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

- 이재홍, 1995, 칸트의 자유개념과 평화사상, 서울대, 석사
- 이정민, 199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이정은, 1999,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 이차복, 1996, 韓半島 停戰體制의 平和體制 전환에 관한 연구 : 北韓의 平和協定締結 提議
變化過程 및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
- 이창훈, 1999,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캐시미르 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
대, 석사
- 이태엽, 1996,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 PKO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중앙
대, 석사
- 이현석, 1999, 미국 인권 외교정책의 이론적 접근, 고려대, 석사
- 이희우, 1998, 中東 平和協商 研究 : 成敗要因과 軍事態勢 變化를 中心으로, 국방대학원,
석사
- 임순미, 1999,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군비축소방안 연구, 부산대, 석사
- 임운갑, 1999, UN 평화유지활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임춘근, 199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 「4자회담」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
- 장영환, 1995,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난민의 인권향상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
- 전구선, 1995, 國際紛爭의 平和적 해결에 관한 연구 : UN PKO(平和維持活動)의 사례를 중
심으로, 단국대, 석사
- 전명갑, 199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 정상연, 1995,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
대, 석사
- 정선진, 1999, 超國內的 公法訴訟에 관한 研究 : 人權侵害에 대한 救濟方法과 관련하여, 이
화여대, 석사
- 정연학, 1995, 핵전쟁에 대비한 평화윤리, 감리교신학대, 석사
- 정재호, 1999, 한반도 평화체제 실효성 보장방안, 서강대, 석사
- 조계현, 1997, 과학수사와 인권보장 :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
- 조상호, 199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 조서영, 1999,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
- 조영신, 1999,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한신대, 석사
- 조운성, 1995, 고등학교 사회과교육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주명환, 1998, 韓半島 平和體制轉換時 主要軍事懸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 석사
- 주성준, 1995, 한국군의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
- 주재호, 1994,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와 방위력 증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
- 채수형, 1999, John Amos Comenius의 平和教育思想, 경상대, 석사
- 최대제, 1999, 토마스 아퀴나스의 평화사상, 서강대, 석사
- 최미경, 1996, 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 연구 : 신귀영씨 일가 사건과 김은주씨 남매 사건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
- 최봉암, 1999,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 최인석, Saint Augustine과 Thomas Aquinas의 평화사상 : 전쟁관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 최현욱, 1994, 탈냉전시대의 국제분쟁과 유엔평화 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 UNTAC과 UNPROFOR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
- 한경희, 1998, 統一後 國民統合을 위한 國民形成教育의 內容에 관한 研究, 충북대, 석사
- 한헌준, 1999,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안양대, 석사
- 허임순, 1999, 北韓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 석사
- 홍기일, 1998, 요녀의 평화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
- 홍성필, 1989, 警察調查活動과 人權保障에 關한 研究, 고려대, 석사
- 황성기, 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 황은진, 1999, 교회의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 한신대, 석사
- KIM CHUL HYUN, 199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acekeeping operation in Somalia, 경희대, 석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소개

우리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1998년 6월 1일 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탈냉전과 지구촌화시대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권과 평화'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소 발족 이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인권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평화 관련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여러 번의 심포지엄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를 대학 특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 연구활동에 인권과 평화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권평화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권평화센터는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재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과 평화 관련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각종 학술행사 개최, 인권과 평화 관련 저널 발간, 인권과 평화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각종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인권과 평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1998년에 한국대학 최초로 태어났으며, 인권평화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이재정 총장이 겸직하였습니다.

1999년 3월에 조희연 교수(사회과학부)가 2대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9년 9월, 학교 기구개편에 따라 인권평화센터로 재출발하였습니다. 2000년 4월에는 3대 소장에 김동춘 교수(사회과학부)가 취임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태어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의 보편적 이념으로서 인권과 평화 연구 및 교육
- ▶ 성공회대학의 이념인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의 발전에 기여
- ▶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각종 캠페인 전개
- ▶ 인권과 평화에 기초한 대안적인 대학교육 실시
- ▶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 ▶ 인권 평화의 가치와 전공교육 결합
- ▶ 지구촌화 시대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교양 교육 실시

- ▶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 인권과 평화 관련 단체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권과 평화 관련 사업 실적

심포지움

1998년

- 9. 2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인권평화연구소 개소 기념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제 1회 심포지움
주제: '국민정부'의 인권문제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두강연: 전환기의 인권과 평화 발표 한완상(한국방송대학교 총장)
발표 1: 인권법의 구조와 내용 박노현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용득(성공회대 교수)
발표 2: 차지훈(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토론: 조용환(변호사,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집행위원) 고병현(성공회대 교수)

2000년

- 6. 2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공동주최
주제: 전쟁과 인권
주제발표 김동춘 교수: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콜로키움

1998년

- 3. 30. 제 1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 -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인권단체」
- 4. 27. 제 2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아시아와 인권
- 5. 4. 제 3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국제NGO와 인권
- 5. 18. 제 4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 5. 25. 제 5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여성과 인권
- 5. 28. 제 6 회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동성애와 인권

1999년

- 5. 25. 제 7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발표: 잔트쿨러 교수(Sand Kuhler, 독일 브레멘대, 철학)
주제: 인권과 지식민주주의
- 11. 17. 제 8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발표: 장하성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주제: 시장(기업)과 NGO

2000년

- 3. 14. 제 9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주제: 국제 NGO와 인권운동
발제: 라지브 나라얀 박사(Dr. 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과 한국 담당관)
라티파 라그조우 씨(Latifa Laghzaoui,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조사관)
유키 안자코 씨(Yuki Anzako,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전 캠페인담당관)
- 3. 25. 제 10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주제: 북한의 식량문제와 인권: 동향과 대안
발제: 법륜 스님(좋은벗들 대표, 『사람답게 살고싶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고난의 강행군』 (1999, 정토출판사) 저자)
- 6. 2. 제 11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주제: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시민운동(Human Rights and Civic Mov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발표: 김민웅 박사(재미 목사, 언론인)
- 6. 7.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제 12 회 인권평화 콜로키움
주제: 한국전쟁과 양인학살의 문제
발표: 김동춘 교수

라운드테이블

1999년

- 5. 24. 제 1 회 원탁토론회(Round Table on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Governance)
발표: 로버트 보스웰 박사(Dr. Robert Bothwell, President Emeritus, National Committee

for Responsive Philanthropy)

2000년

6. 26 제 2 회 라운드테이블

주제: 제 3의 길과 사회민주주의

발표 1: 볼프강 메르켈 교수(Prof. Wolfgang Merkel, 하이델베르그대 정치학과)

The Third Ways of Social Democracy into the 21st Century in Germany and Europe

발표 2: 에른스트 힐레브란트 박사(Dr. Ernst Hillebrand, Friedrich Ebert Stiftung)

NGOs, Social Movement and Democracy: The transnational perspective

특강

1998년

8. 14. '인권과 평화' 강연회 - 분단세계 50년과 21세기 통일시대의 전망

1999년

1. 24. 제 1 회 NGO 특강

주제: 세계평화와 갈등관리

발표: 요한 갈통 교수(Prof. Johan Galtung, 트로모 대학, 평화발전 네트워크 대표)

4. 14. 제 2 회 NGO 특강

주제: 공공정책 결정에서의 시민과 NGO의 역할

발표: 러셀 카고 교수(Prof. Russel Cargo, 조지 메이슨대)

5. 14. 제 3 회 NGO 특강

주제: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

발표: 마틴 하트 랜스버그 교수(Prof.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6. 6. 제 4 회 NGO 특강

주제: 남미의 개발, 인권, NGO운동

발표: 엔리케 발렌시아 교수(Enrikue Valencia, 멕시코대)

11. 12. 제 5 회 NGO 특강

주제: NPO Sector와 정책, 그리고 젠더

발표: 오사와 마리(大澤眞理) 교수(일본 도오쿄오대 사회과학연구소)

12. 27. 제 6 회 NGO 특강

발표: 이창휘 박사(ILO 연구원)

주제: 세계화 시대 시민사회와 노동운동-ILO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미나 및 포럼

1997년

7. 23. 제 1 회 대안교육 세미나 - '한국의 대안교육의 현실'

12. 12. 제 2 회 대안교육 세미나 - 발도르프 교육 세미나

1998년

8. 4. 대안교육포럼 - 일본의 자유학교와 민족학교 포럼

교육 활동

1997년

10. 9. 제 1 회 교사아카데미

1998년

3. 10. 제 2 회 교사 아카데미

워크샵

1998년

2. 3. 제 1 회 인권평화 워크샵 -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 초청 세미나

2. 25. 제 2 회 인권교육 워크샵 - '새 시대의 질서와 인권'

'김대중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

1999년

8. 23-25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Workshop 공동주최

발제: 장희숙 교수(사회복지학과)

인권과 평화교육

95. 3. 인권평화교육 강화 결정

- 95. 3. 전교생 사회봉사 의무화
(인권평화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사회봉사)
- 95. 9. '인권과 평화' 교양 필수 과목화
- 96. 3. '인권과 평화' 영역 필수 과목화
- 98. 3. '인권과 평화' 교과목 개설 확대
'법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지구촌 사회의 평화'
'국제인권법' '지구촌인권학' '정보화와 인권' 등

인권과 평화교육 및 연구조사를 위한 제도화

1997년

- 4. 1. '인권평화위원회' 설치

1998년

- 6. 1. '인권평화연구소' 설치

1999년

- 9. 10. '인권평화센터' 설치

인권과 평화 연구조사 및 프로젝트 개발과 연대활동

1998년

- 2.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관한 조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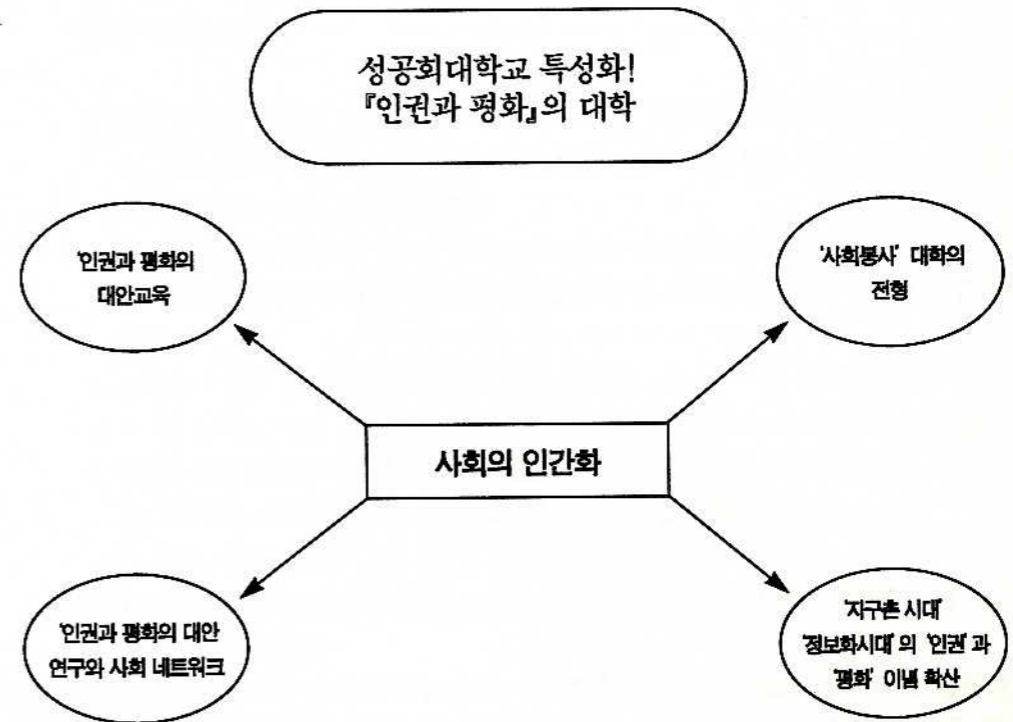
1999년

- 1. 14. 가칭 '한국민주화운동 기념관' 추진사업 개시
- 2. '환경친화대학 모형개발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개발
- 2. 'NGO 이해·연계·지원 교육체제 구축 연구' 프로젝트 개발
- 3.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참여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비상대표자회의 등)
- 3. 19. 벨기에 르 스와르(Le Soir)지 국제부장 인터뷰
- 4. NGO 이해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육방법 개발 연구프로젝트 개발

- (교육부 정책개발지원)
- 4. NGO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리 사업 개시
- 4. 인권평화저널 창간 편집위원회
- 5. 대학특성화 프로젝트 개발
- 5. 2000 ASEM 한국회의 준비위원회 참석
- 8. 15.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참여
- 8. 해외 NGO 인턴 파견 지원사업 프로젝트 개발
- 9. NGO 총서 번역사업 개시(Civics for Democracy 번역 시작)
- 10. 서울 NGO 세계대회 참석(주제: Theories on Civil Society 분과)
- 11.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입법 활동 지원

2000년

- 1. 8.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기념 유가족협의회 농성 해단식 참석
- 1. 12. 한국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발족
- 5. 18-20. 제 4 회 동아시아 인권평화 국제회의 참석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방법

1. 『인권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전공에 관계없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논문과 체계적인 논평을 포함한다. 단, 다른 학술지나 책자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권과 평화』에 제출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심사를 받는다. 논문평가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 제출자는 논문을 수정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논문 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최종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 제출시 저자 성명과 논문 제목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기관, 전자우편 주소, 근무처의 전화번호와 주소, 자택의 전화번호와 주소도 표지에 함께 기재한다.

원고 작성 방법

1. 모든 원고의 분량은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호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출한다. 원고 제출시 출력본 1부 이상과 디스켓을 동시에 제출하며,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한자나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글 옆에 괄호를 하여 부기한다.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의 순서로 한다. 절은 '1., 2., 3., ...'의 순서로, 항은 '(1), (2), (3), ...'의 순서로, 목은 '(1), (2), (3), ...'의 순서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써넣는다.
4. 인용논문의 표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Habermas, 1987: 130)
5. 내용에 관련된 각주는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내용주의 경우에도 인용방식은 위와 같다.
6.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한자권 문헌, 알파벳권 문헌, 기타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 순서는 한글 문헌과 한자권 문헌은 각각 가나다순으로, 알파벳권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단, 같은 저자의 문헌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열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 구분토록 한다.

7.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한글이나 한자어권의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낫표(『』)로, 알파벳권의 논문이나 기사 등은 겹따옴표(" ")로 표기한다. 한글이나 한자어권 단행본의 경우는 겹낫표(『』)로, 한글이나 한자어권 학술지의 경우는 겹쐇쇠(《》)로 표기한다. 알파벳권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경우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만 표기한다.

2) 표기 순서는 논문의 경우 성명, 발행년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일 순으로 하며, 단행본의 경우 성명, 발행년도, 책제목, 출판사 순으로 한다(발행지는 생략).

3) 예: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최장집, 1998, 『“민주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조건과 함의』, 《당대비평》3호

Hutton, W. 1995, *The State We're in*, Jonathan Cape.

Jessop, B. 1991, "Accumulation Strategies, State Forms and Hegemony Projects," in S. Clarke(ed.), *The State Debates*, St. Martin's Press.

8.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는 원고 제목 옆에 별표를 부기하여 첫 번째 페이지의 각주(1)번 바로 위에 기재한다.

9. 단과 글자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10. 논문의 말미에는 영어제목과 영어 단어 200자 이내의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11. 투고와 관련된 문의 및 투고는 아래의 주소로 한다.

(우) 152-716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T. 02-2610-4152. Fax. 02-2610-4296

ihp@mail.skhu.ac.kr

혹은 김 동 춘

T. 02-2610-4236. Fax. 02-2610-4138

dckim@mail.skhu.ac.kr

인권과 평화

제1권 1호

2000년 7월 7일 인쇄

2000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성 수

편집인: 김 동 춘

발행처: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Center for Human Rights and Peace, SungKongHoe University

152-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1

1-1, Hang-Dong, Kuro-Ku, Seoul, 152-716, Korea

Tel : 02-2610-4152 Fax : 02-2610-429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khu.ac.kr/~ihp>

E-Mail : ihp@mail.skhu.ac.kr

인쇄처: 오름시스템(02-2273-7011)